

측정·특검기관 평가기준 설명회

일시	분야	내용	발표자
14:00-14:20	총괄	기관평가방안	강성훈 사무관 고용노동부
14:20-15:00	작업환경측정	1.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의 능력 2. 측정결과의 신뢰도	이채관 교수 인제대학교
		3. 시설·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의 정도 등	이인섭 실장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5:10-15:50	특수건강진단	1. 건강진단 분석능력 3. 시설·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의 정도 등	김규상 책임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 건강진단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임종한 교수 인하대학교
15:50-16:30	총괄	질의응답	발표자 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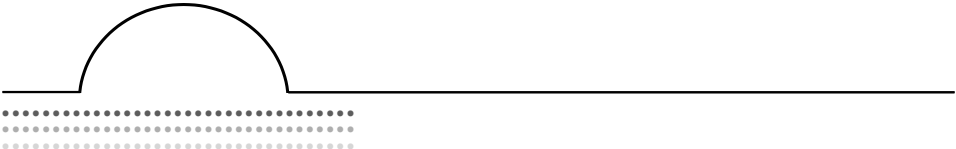
Contents

◀ 측정·특검기관 평가업무 운영방안 / 1

◀ 지정측정기관 평가표(안) / 9

◀ 지정특검기관 평가표(안) / 55





측정·특검기관 평가업무 운영방안

측정·특검기관 평가업무 운영방안

□ 관련 근거법령

- 법 제42조 제9항 및 법 제42조 제10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은 지정측정/검진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
- 시행규칙 제97조(측정기관 평가)에 의한 지정측정기관 평가기준
 1.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의 능력
 2. 측정결과의 신뢰도
 3. 시설·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
- 시행규칙 제105조의2(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등)에 의한 평가기준
 1. 건강진단·분석능력
 2. 건강진단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3. 시설·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전산화 정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전문가 회의 추진현황

- 내·외부 참여전문가 현황

구분	검진기관 평가	측정기관 평가
학계	-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 - 성균관대 김동일교수 - 단국대노상철 교수, 채유미 교수 - 고신대 김정원 교수 - 구미차병원 우극현 교수	- 연세대학교병원 김치년 교수 - 인하대학교병원 백용준 과장 - 인제대학교병원 이채관 교수 - 하나환경컨설팅 권영규대표
경총, 노총	-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팀 전승태 책임전문위원 외 1명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환경연구소 조기홍 국장	
노동부 및 공단	- 고용노동부 강성훈 사무관, 고용노동부 권기태 사무관 - 공단 김규상 책임연구위원, 이인섭 실장 등	

- 내부회의 3회, 내외부 전문가회의 5회 개최

□ 평가 운영방안

- ▶ 평가 주체(공단이 주관, 외부 전문가 참여)
- ▶ 평가 대상(지정기관 전체)
- ▶ 평가 주기(2년 마다)
- ▶ 주요 평가방법(2년간 업무실태, 항목별 평가기준 적용)
- ▶ 공표방법(고용노동부, 공단 인테넷 홈페이지)
- ▶ 인센티브(고용노동부 점검 면제, 지원사업 우선배정 등)
- ▶ 기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평가 주체

- 공단(산업보건실)이 주관, 연구원 참여, 외부 전문가 일부 위촉
- 각 청별 2개 평가반 운영, 1개반에 전문가 3~4명(공단, 외부 안배)으로 운영, 1개반이 기관당 2일 방문 평가

※ 동 기준으로 평가수준(평가항목 및 난이도 등)을 결정

☞ 평가주체, 평가반 구성 등에 이견이 없으므로 초안대로 확정

○ 평가 대상

- 지정 측정 또는 특검기관 전체(평가 전년도 말 기준)

○ 평가 주기

- 2년에 1회(측정 · 특검 격년제로 운영)

☞ 평가주기는 2년에 1회에 이의가 없으므로 초안대로 확정

○ 주요 평가방법

- 평가 전년도 말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업무에 대해 평가
- 세부항목별 통합 등의 일부 항목조정(설명회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초안 확정 예정)
-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포함여부 등에 대하여는 항목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함

※ 시범평가시에는 고용노동부가 공단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을 사용

☞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등은 분야별로 별도로 논의함

- 법정 최소 인력을 초과하는 인력(전담인력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된 인력)은 가점부여 방안 검토하기로 함

○ 평가항목 표시방법, 배점 등

- 각 분야별(측정·특검) 4개 항목별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 종합평가지 각 항목별 가중치는 시범평가 후 결정
- 배점은 각 세부평가 항목당 등급별로 5점, 3점, 1점씩을 부여하고, 세부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주어 평가 항목별 100점으로 합산

☞ 시뮬레이션을 해본 후, 점수편차가 너무 큰 경우는 3점, 2점, 1점으로 수정 예정

- 가점은 세부 항목당 1점, 0.5점씩을 부여하되, 평가항목(4개)의 점수(100점)에 가산

○ 공표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고용노동부,공단)
- 평가등급(A~E, 5등급)

☞ 공표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체 명단 공개에 모두 동의, 평가항목별 평가등급 및 등급별 점수범위를 공표하자는 기존(안)에 다수가 반대하여 종합등급과 평가항목별 등급을 공표하기로 변경하기로 잠정 결정하되, 더 논의가 필요

- 최종 평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
- 절대평가, 상대평가 각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절대·상대 평가를 혼용한 평가기준을 운영하자는 의견에 동의.
 - 다만, 등급별 최소비율 등은 2011년 시범평가 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 인센티브

- 최우수 기관(A등급)은 차기년도 노동부 점검 면제
- A등급이 많을 경우 위원회에서 대상 결정(예 : 상위 10% 등)

- 각종 정부 지원사업 우선배정 등

☞ 패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에 대부분 동의

- 정부포상에 우선추천, 사업장 안내시 등급도 안내, 신규장비 구입 시 용자지원 등은 행정지도 등으로 해결할 사안이므로 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사업계획 수립시 등에 반영하기로 함
- 다만, 인증패 수여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배제

○ 기 타

- 평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측정·특검 별도)
- 기관대상 설명회 개최여부, 매뉴얼 개발 등에 대하여는 추후에 별도로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논의하여 추진

□ 향후 추진계획

<2010년>

○ 설명회 및 의견수렴(10월말)

-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

○ 초안 확정(11월)

-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초안 확정

<2011년>

○ 시범평가 계획

- 시범평가는 희망기관을 우선으로 하되, 희망기관이 적은 경우 지역별로 할당 배분
- 물량은 분야별(측정·특검)로 각 지방청별 3~4개 기관, 총 21개 기관을 선정하되
 - 대학병원, 종합병원, 의원(주식회사)급을 고루 안배

※ 6개 지방청별로 측정·특검기관이 많은 곳 순으로 4개소 또는 3개소

- 평가반은 분야별(측정·특검)로 3개반 운영(1반 7개소 기준)

- 시기는 '11년 2~3월중 실시

- 평가매뉴얼은 시범평가반이 평가 전·후에 논의하여 작성

○ 시범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8월)

- 시범평가 결과와 평가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을 확정

○ 고시 개정(~11월)

<2012년>

○ 고시 시행

-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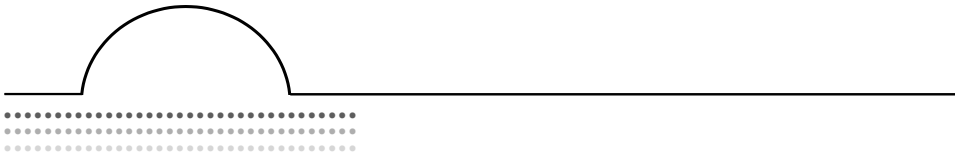
※ 특수건강진단기관은 2013년 평가 실시

<붙임>

○ 등급분류 참고기준(안)

구 분	등급분류 참고기준		비 고
	배정비율	평균점수	
A(최우수)	상위 15% 이내	평균 90점 이상	최소 5% 이상
B(우수)	A등급을 제외한 상위 20% 이상	80점 ~ 95점 미만	
C(보통)	A~B등급을 제외한 상위 30% 이상	65점 ~ 85점 미만	
D(미흡)	A~C등급을 제외한 상위 20% 이상	55점 ~ 70점 미만	
E(불량)	하위 15% 이내	평균 60점 미만	

※ 위 기준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지정측정기관 평가표(안)

지정측정기관 평가표(안)

1. 기관 일반현황

기 관 명			
소 재 지	(-)		
관 할(지)청		총인원 : ____명	기술사 : ____ 명
대 표 자			산업위생기사 : ____ 명
전화번호			산업위생산업기사 : ____ 명
			분석전담자 : ____ 명
지정일자	최초지정일 : 변경지정일 :		

2. 평가일시 및 평가자

방 문 일	2010 년 월 일		
-------	----------------------	--	--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평가운영반원			
평가운영반원			
평가운영반원			
평가운영반원			
평가운영반원			

3. 최종 평가결과

총 점		※ 가 점 :	
1.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 능력		2. 측정결과의 신뢰도	
3. 시설·장비의 성능		4. 그 밖의 제반사항	

4. 총평

5.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A : 5점, B: 3점, C : 1점

(가점 항목 - A : 1점, B : 0.5점, C : 0점)

구 분	세부평가 항목	가중치	평가	점수
I.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 능력	1.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 자체 매뉴얼의 보유 여부	1.6	A,B,C	
	2. 최근 2년 이내에 외국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 참여 경험 여부	1.6	A,B,C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에 참여한 횟수	1.6	A,B,C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 실시결과	1.6	A,B,C	
	5. 내부 측정·분석 정도관리 시스템 보유 및 실행 여부	1.6	A,B,C	
	6. 측정·분석결과에 대한 내부 감사 실시 여부	1.6	A,B,C	
	7. 지정측정기관의 산업위생관리기술사 보유 여부	1.6	A,B,C	
	8. 작업환경측정 책임자의 측정경력 년 수	1.6	A,B,C	
	9. 분석 책임자의 분석경력 년 수	1.6	A,B,C	
	10. 유해인자별 및 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 지정 여부	1.6	A,B,C	
	11. 최근 2년간 노동부 시정지시 또는 업무정지 경험 여부	4.0	A,B,C	
II.측정결과 의 신뢰도	1. 예비조사를 실시한 경우 측정계획서의 작성 여부	0.8	A,B,C	
	2. 작업환경결과표상 종합의견의 질적수준	0.8	A,B,C	
	3. 소음 본 측정시 지시소음계 사용 여부	0.8	A,B,C	
	4. 누적소음노출량계의 보정 수행 여부	0.8	A,B,C	
	5. 누적소음노출량계 및 지시소음계의 기기 환경설정의 적정성	0.8	A,B,C	
	6. 누적소음노출량계 산출 기록물의 보관 여부	0.8	A,B,C	
	7. 시료 채취 전·후 시료채취기의 유량 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	0.8	A,B,C	
	8. 필터의 중량분석 횟수 및 대장의 적정 기록 여부	0.8	A,B,C	
	9. 산업안전보건법상 시료채취 시간 준수 여부	0.8	A,B,C	
	10. 산업안전보건법상 시료 채취 개수의 준수 여부	0.8	A,B,C	
	11. 지역시료채취를 실시한 경우 그 사유 명시 여부	0.8	A,B,C	
	12. 미지시료 확인을 위한 Bulk sample 채취·분석 실적	0.8	A,B,C	
	13. 사업장에서 시료채취 시 채취대장의 작성여부	0.8	A,B,C	
	14. 현장 공시료(활성탄 및 필터) 채취 여부	0.8	A,B,C	
	15. 현장 공시료(활성탄 및 필터) 분석결과에의 보정 여부	0.8	A,B,C	
	16. 시료의 탈착율(유기용제) 및 회수율(중금속) 실험 수행 여부	0.8	A,B,C	
	17. 시료의 탈착율 및 회수율 보정 수행 여부	0.8	A,B,C	
	18. 채취시료의 분석결과물(크로마토그램 등)의 적정 보관 여부	0.8	A,B,C	
	19. 측정농도의 결과평가의 적절성 여부	0.8	A,B,C	
	20. 외부분석기관 의뢰 시 해당 문서 보관 및 결과 적정 반영 여부	0.8	A,B,C	
	21. 시료 전달시 인수인계대장 작성·보관 여부	0.8	A,B,C	
	22. 실험실 시료관리대장 작성·보관 여부	0.8	A,B,C	
	23.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노출기준의 보정 여부	0.8	A,B,C	
	24. 8시간 시간가중평균치의 적정 계산 여부	0.8	A,B,C	
	25. 작업환경측정 실시 사업장 현장 평가	0.8	A,B,C	

구 분	세부평가 항목	가중치	평가	점수
Ⅲ.시설·장비의 성능	1. 측정장비 매뉴얼·이력 관리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	1.0	A,B,C	
	2. 분석 장비 매뉴얼·이력 관리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	1.0	A,B,C	
	3. 측정 장비의 신규 도입, 노후장비 교체 등 장비의 최신화 노력도	0.8	A,B,C	
	4. 분석 장비의 신규 도입, 노후장비 교체 등 장비의 최신화 노력도	0.8	A,B,C	
	5. 시료채취 및 분석 장비에 대한 책임자 지정 여부	0.8	A,B,C	
	6. 시료채취 및 보정장비의 사용 및 운영지침(또는 매뉴얼) 보유 여부	0.8	A,B,C	
	7. 시료채취장비의 주기적인 유지·보수 수행 여부	1.2	A,B,C	
	8. 분석장비의 주기적인 유지·보수 수행 여부	1.2	A,B,C	
	9. 필수 장비 이외의 측정 및 분석 장비 보유 여부	1.0	A,B,C	
	10. 검·교정 장비에 관한 문서 보관 여부	0.8	A,B,C	
	11. 국내·외 공인시험·교정 및 검사기관에서의 인정 여부	0.8	A,B,C	
	12. 측정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실시 여부	1.2	A,B,C	
	13. 전자저울 등의 분석기기 검·교정 실시 여부	1.2	A,B,C	
	14. 직독식 장비의 사용, 운반, 보관, 유지·관리에 대한 적정 여부	1.0	A,B,C	
	15. 각 분석 장비별 실험실용 후드장치 설치여부	0.8	A,B,C	
	16. 분석 중 배기, 배액 처리 설비의 적정 여부	0.8	A,B,C	
	17. 실험실내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보유 여부	0.8	A,B,C	
	18. 실험실내 가스용기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0.8	A,B,C	
	19. 실험에 사용하는 시약의 특성에 따른 적정 보관 여부	0.8	A,B,C	
	20. 실험실 보건안전 적정 여부 및 지침(수칙)의 문서화	0.8	A,B,C	
	21. 실험실내 보호용구 구비의 적정 여부	0.8	A,B,C	
	22. 시료보관 냉장실 및 냉동실 적정 운영 여부	0.8	A,B,C	
Ⅳ.보유 인력 의 교육이 수·능력개 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 사항	1. 측정 및 분석요원의 교육·훈련계획 등의 문서 보유 여부	1.0	A,B,C	
	2. 지정측정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문서화 여부	1.0	A,B,C	
	3. 지정 측정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	1.2	A,B,C	
	4. 지정 분석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	1.2	A,B,C	
	5. 측정 및 분석요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여부	1.0	A,B,C	
	6. 측정기관 지정인력의 최근 2년간 연구실적	1.0	A,B,C	
	7. 측정 및 분석 인력의 자기개발 실적	1.0	A,B,C	
	8. 측정 및 분석 인력의 각종 국내·외 학회 참여율	1.0	A,B,C	
	9. 자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 실태	1.0	A,B,C	
	10.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작성, 검토, 승인라인의 적정 여부	1.0	A,B,C	
	11.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 노력도	1.2	A,B,C	
	12. 기관 자체 제작한 안내 팸플렛 등의 보유 여부	1.0	A,B,C	
	13. 시약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나 독성 및 기타자료 확보여부	1.0	A,B,C	
	14. 시약·물품의 선정, 구매 및 보관절차의 문서화/전산화 여부	1.0	A,B,C	
	15. 작업환경측정 결과 관련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및 관리상태 적정 여부	1.0	A,B,C	
	16. 표준물질 유효기간의 준수 및 문서화(전산화) 여부	1.0	A,B,C	
	17. 측정기관 홈페이지 보유 여부	1.0	A,B,C	
	18. 기관 또는 보유인력의 표창 등 실적 여부	1.0	A,B,C	
	19.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송부기간 준수 여부	1.4	A,B,C	
가점 항목(1)	1.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실시율(가점 항목)	1.0	A,B,C	

1.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 능력 (11항목)

평가항목 1.1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 자체 매뉴얼의 보유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 자체 매뉴얼 관련 문서 등을 조사하여 파악	자체 매뉴얼을 물질별로 정리하여 보유한 경우	☐ A
	자체 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B
	자체 매뉴얼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C
※ 참고사항 : KOSHA CODE, NIOSH, OSHA 또는 ISO의 공정시험법 등을 출력물 혹은 전자문서로 보유하고 있으면 자체매뉴얼 보유로 간주 ※ 점검서류 :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 자체 매뉴얼 관련 문서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2	최근 2년 이내에 외국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 참여 경험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최근 2년 이내에 외국 정도관리 참여 실적을 조사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참여한 경우	☐ A
	최근 2년 이내에 1회 참여한 경우	☐ B
	최근 2년 이내에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	☐ C
※ 참고사항 : 실시국가 및 프로그램명을 기록 (실시 국가 : _____, 프로그램명 _____) ※ 점검서류 : 외국 정도관리 인증서 등을 확인 후 평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에 참여한 횟수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정도관리 실시관련 서류를 조사하여 기록	정도관리 참여 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	☐ A
	정도관리 참여 횟수가 5회 이상 10회 미만인 경우	☐ B
	정도관리 참여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	☐ C
※ 참고사항 : - ※ 점검서류 : 정도관리 참여 신청서 및 결과 서류 등을 확인하여 기록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 실시결과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최근 2년 이내 정도관리 실시결과에 대한 기록을 조사하여평가하되 부적합 건수를 기록	부적합 건수가 없는 경우	☐ A
	부적합 건수가 1회인 경우	☐ B
	부적합 건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C
※ 참고사항 : - ※ 점검서류 : 정도관리 관련 공문 등 불합격 건수 : (유기화합물 분야 : _____ 건, 금속분야 : _____ 건)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5	내부 측정·분석 정도관리 시스템 보유 및 실행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내부 측정·분석 정도관리 시스템 관련 문서 등을 조사하여 파악	시스템 보유 및 적정하게 실행하고 있는 경우	☐ A
	시스템을 일부 보유하고 실행하는 경우	☐ B
	내부 정도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	☐ C
※ 참고사항 : ※ 점검서류 : 내부 측정·분석 정도관리 시스템 관련 문서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6	측정·분석결과에 대한 내부 감사 실시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내부 감사 실시 관련 문서 등을 조사하여 파악	내부 감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 경우	☐ A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미흡한 경우	☐ B
	내부 감사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	☐ C
※ 참고사항 : ※ 점검서류 :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내부 감사 관련 문서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7	지정측정기관의 산업위생관리기술사 보유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기술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 서류 (4대 보험 등)을 확인	산업위생관리기술사를 2명 이상 보유한 경우	☐ A
	산업위생관리기술사가 1명 보유한 경우	☐ B
	산업위생관리기술사가 없는 경우	☐ C
※ 참고사항 : - ※ 점검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 및 소속여부는 4대 보험 등을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8	작업환경측정 책임자의 측정경력 년 수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작업환경측정 책임자의 측정경력 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조사 하여 기록	경력 15년 이상인 경우	☐ A
	경력 14~10년인 경우	☐ B
	경력 10년 미만인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작업환경측정 책임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2에 의거 산업위생관리기술사/지도사를 의미 ② 경력은 작업환경측정업무를 수행한 총 경력을 의미 경력년수 : _____ 년 ※ 점검서류 : 작업환경측정 책임자 경력의 확인이 가능한 문서 또는 4대 보험 등을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9	분석 책임자의 분석경력 년 수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분석 책임자의 분석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조사하여 기록	경력 15년 이상인 경우	☐ A
	경력 14~10년인 경우	☐ B
	경력 10년 미만인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분석 책임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2에 의거 “분석을 전담하는자”로서 분석을 전담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경력이 가장 많은 자를 의미하며, 특수건강진단의 분석인력은 해당하지 않음 ② 경력은 산업보건분석 업무를 수행한 총 경력을 의미 경력년수 : _____ 년 ※ 점검서류 : 산업보건 분석자 경력의 확인이 가능한 문서 또는 4대 보험 등을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10	유해인자별 및 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 지정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기관을 지정 받은 경우 지정서,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 자료를 확인	작업환경전문기관으로 지정 받고, 매년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	☐ A
	작업환경전문기관으로 지정 받고, 최근 2년 이내에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	☐ B
	작업환경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지 않았거나, 관련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 C
※ 참고사항 : - ※ 점검서류 : 작업환경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및 관련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11	최근 2년간 지정측정기관에 대한 노동부 시정지시 또는 업무정지 경험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노동부 정기 점검시 시정지시 등을 받은 경우 그 기록을 조사하여 기록	경고 또는 시정지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 A
	경고 또는 시정지시 경험이 있는 경우	☐ B
	업무정지 경험이 있는 경우	☐ C
※ 참고사항 : 노동부 실적자료 참조하여 평가 (시정지시: 건, 경고: 건, 업무정지: 건) ※ 점검서류 :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2. 측정결과의 신뢰도 (25항목)

평가항목 2.1	예비조사를 실시한 경우 측정계획서의 작성 여부 (전회 측정 실시 사업장 제외)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측정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 후 측정계획서 작성여부를 조사	측정계획서를 항상 작성하는 경우	☐ A
	측정계획서를 가끔 작성하는 경우	☐ B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 C
※ 참고사항 : 1.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 제17조에 의한 측정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원재료의 투입과정부터 최종 제품생산 공정까지의 주요공정 도식 ② 해당공정별 작업내용, 측정대상공정 및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 ③ 측정대상 유해인자, 유해인자 발생주기, 종사근로자 현황 ④ 유해인자별 측정방법 및 측정소요기간 등 필요한 사항 2. 대상이 없는 경우 전회 측정 실시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평가하고 이 경우는 측정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 3. 가끔 작성하는 경우라 함은 결과표 50% 이상 작성한 경우를 의미 ※ 점검서류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5부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2	작업환경결과표상 종합의견의 질적수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측정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 후 조사하여 종합의견의 질적 수 준을 파악	보건규칙에 준하는 수준의 기술적 내용을 포함 하며, 종합적으로 우수하게 작성된 경우	☐ A
	보건규칙에 준하는 수준의 기술적 내용을 포함 하여 작성된 경우	☐ B
	보건규칙에 준하는 수준의 기술적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미흡하게 작성된 경우	☐ C
※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21호서식에 의하면 작업환경결과표상 종합의견은 공학적·관리적· 개인위생적 측면에서 측정결과의 평가,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점검서류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5부(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이 있는 결과표)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3	소음 측정 시 지시소음계(Sound Level Meter) 사용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측정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 후 조사하여 지시소음계로 측정한 건수가 전체 소음측정건수 중 몇 건인지를 기록	측정결과표상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	☐ A
	측정결과표상 10%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 B
	측정결과표상 10% 이상 사용하는 경우	☐ C
※ 참고사항 : 지시소음계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 ※ 점검서류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5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4	누적소음노출량계(Noise dosimeter)의 보정 수행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Calibrator 보유 여부 및 실제 누적소음노출량계의 보정 수행 여부를 보고 판단	Calibrator를 보유하고 있으며, 누적소음노출량계의 보정을 실시하는 경우	☐ A
	Calibrator를 보유하고 있으나, 누적소음노출량계의 일부가 보정되지 않은 경우	☐ B
	Calibrator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누적소음노출량계의 전부가 보정되지 않은 경우	☐ C
※ 참고사항 :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누적소음노출량계 전부에 대하여 보정 여부를 직접 확인 ※ 점검서류 : -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5	누적소음노출량계(Noise dosimeter) 및 지시소음계의 기기 환경설정의 적정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누적소음노출량계/지시소음계를 무작위로 5대씩 선정하여 조사	모두 적정	☐ A
	2대가 미흡한 경우	☐ B
	3대 이상 미흡한 경우	☐ C
※ 참고사항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26조(측정방법) 규칙 별표 11의3에 의한 소음수준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①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소음계 지시침의 동작은 느린(Slow) 상태로 한다. ③ 누적소음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Criteria= 90dB, Exchange Rate=5dB, Threshold=80dB로 기기설정 ※ 점검서류 :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6	누적소음노출량계 산출 기록물의 보관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측정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 후 조사하여 기록물과 대비	5개 모두 기록물이 있는 경우	☐ A
	5개 중 3~4개의 기록물이 있는 경우	☐ B
	5개 중 2개 이하의 결과물만 있는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측정결과표 5개중 몇 개의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는 경우 사유를 기록 ② 1개의 측정결과표상 나타난 소음측정치중 90% 이상의 측정치에 대해 그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다면 그 결과표에 한해 100% 있다고 간주 ※ 점검서류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5부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7	시료 채취 전·후 시료채취기의 유량 보정 수행 및 결과 반영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시료채취기의 유량 보정을 실시하는 경우, 관리대장을 조사	시료 채취 전·후 시료채취기의 유량보정 후 결과를 반영 하는 경우	☐ A
	시료 채취 전·후 시료채취기의 유량보정만 수행하는 경우	☐ B
	시료 채취 전·후 시료채취기의 유량보정 미실시 및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 C
※ 참고사항 : 펌프기종, 일시, 유량 보정자 이름, 보정 횟수, 유량보정기기명, 전후 유량, 평균유량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점검서류 : 시료채취기의 유량 보정 관리대장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8	필터의 중량분석 횟수 및 대장의 적정 기록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관리대장 등을 조사하고 기록하지 않는 경우 사유를 기록	문서대장을 보유하고 1개 필터에 대하여 3회 이상 중량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 A
	문서대장을 보유하고 1개 필터에 대하여 2회 실시하는 경우	☐ B
	문서대장을 보유하고 1개 필터에 대하여 1회 실시하는 경우	☐ C
※ 참고사항 : - ※ 점검서류 : 필터의 중량분석 관련 문서대장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9	산업안전보건법상 시료채취 시간 준수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측정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 후 조사하여 시료채취시간을 확인	모두 적정한 경우	☐ A
	미준수 1건이 확인된 경우	☐ B
	미준수 2건 이상 확인된 경우	☐ C
※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상 시료채취 시간은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이상 연속 측정 또는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 측정(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 제18조) ※ 점검서류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5부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10	산업안전보건법상 시료 채취 개수의 준수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측정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 후 조사하여 시료채취개수를 확인	모두 적정한 경우	☐ A
	미준수 1건이 확인된 경우	☐ B
	미준수 2건 이상 확인된 경우	☐ C
※ 참고사항 :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인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단위작업장소에 근로자가 1인인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 매 5인당 1인 이상 추가로 측정. 다만, 작업근로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수를 20인으로 조정 가능(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 제19조) ※ 점검서류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5부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11	지역시료채취를 실시한 경우 그 사유 명시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측정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 후 조사하여 명시여부 확인	항상 명시하는 경우	☐ A
	명시하지 못한 1건이 확인된 경우	☐ B
	2건 이상 명시하지 못한 경우	☐ C
※ 참고사항 :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 방법으로 실시(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명시하여야 한다)할 것(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제1항제3호) ※ 점검서류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5부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12	미지시료 확인을 위한 Bulk sample 채취·분석 실적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물질시료채취·분석 실적 및 관련 대장을 확인하고 평가년도의 유해 인자명과 그 실적(건수)을 기록	채취·분석 실적이 20건 이상	☐ A
	채취·분석 실적이 10~19건인 경우	☐ B
	채취·분석 실적이 10건 미만인 경우	☐ C
※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그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평가 ※ 점검서류 : 고형시료(Bulk sample) 채취·분석 실적 및 관련대장 채취·분석 실적: _____ 건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13	사업장에서 시료채취 시 채취대장의 작성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측정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 후 조사하여 채취대장과 대비 확인하고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유를 기록	5개의 측정결과표 중 5개 모두의 시료채취내용이 채취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A
	3~4개의 기록물이 있는 경우	☐ B
	2개 이하의 결과물만 있는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채취일시, 유해인자, 시료채취시간, 온도, 습도, 사업장명, 측정자명, 펌프명, 측정전·후 유량, 측정 대상자 성명, 근로자 직무, 채취시간, 측정매체, 채취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함 ② 1개의 측정결과표상 나타난 모든 시료채취 내용 중 90% 이상이 채취대장에서 확인되면 그 결과표에 한해 100% 채취대상을 작성되어 있다고 간주 ※ 점검서류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5부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14	현장 공시료(활성탄 및 필터) 채취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현장 공시료 채취하는 경우 기록을 조사하여 기록	현장 공시료를 항상 채취하는 경우	☐ A
	현장 공시료를 채취한 경험이 있는 경우	☐ B
	현장 공시료를 항상 채취하지 않는 경우	☐ C
※ 참고사항 : - ※ 점검서류 : 최근 2년 이내의 현장 공시료 채취하는 관련 서류 또는 대장을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15	현장 공시료(활성탄 및 필터) 분석결과에의 보정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현장 공시료를 보정하는 경우, 기록을 조사	항상 보정하는 경우	☐ A
	보정 경험이 있는 경우	☐ B
	거의 보정하지 않는 경우	☐ C
※ 참고사항 : 보정한 경험이 있는 경우라 함은 점검일로부터 최소한 3개월에 1회 이상을 의미하고 거의 보정하지 않는 경우라 함은 그 이상의 기간을 의미 ※ 점검서류 : 현장 공시료의 분석결과에 보정하는 관련 서류 또는 대장을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16	시료의 탈착율(유기용제) 및 회수율(중금속) 실험 수행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실험하는 경우 기록을 조사 / 실험하지 않는 경우 사유를 기록	탈착율 및 회수율을 항상 실험하는 경우	☐ A
	탈착율 및 회수율을 실험한 경험이 있는 경우	☐ B
	탈착율 및 회수율을 거의 실험하지 않는 경우	☐ C
※ 참고사항 : 실험한 경험이 있는 경우라 함은 점검일로부터 최소한 3개월에 1회 이상을 의미하고, 거의 실험하지 않는 경우라 함은 그 이상의 기간을 의미 ※ 점검서류 : 시료의 탈착율 및 회수율을 실험하는 크로마토그램 또는 관련 서류 또는 대장을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17	시료의 탈착율 및 회수율 보정 수행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분석결과에 시료의 탈착율 및 회수율 보정하는 경우, 기록물을 조사	항상 보정하는 경우	☐ A
	보정한 경험이 있는 경우	☐ B
	거의 보정하지 않는 경우	☐ C
※ 참고사항 : 보정한 경험이 있는 경우라 함은 점검일로부터 최소한 3개월에 1회 이상을 의미하고, 거의 보정하지 않는 경우라 함은 그 이상의 기간을 의미 ※ 점검서류 : 시료의 탈착율 및 회수율을 실험하는 크로마토그램 또는 관련 서류 또는 대장을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18	채취시료의 분석결과물(크로마토그램 등)의 적정 보관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측정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 후 조사하여 기록물과 대비 확인	5개 모두 기록물이 있는 경우	☐ A
	3~4개의 기록물이 있는 경우	☐ B
	2개 이하의 결과물만 있는 경우	☐ C
※ 참고사항 : 1개의 측정결과표상 나타난 측정치중 90 % 이상의 측정치에 대해 그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다면 그 결과표에 한해 100 % 있다고 간주 ※ 점검서류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5부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19	측정농도의 결과평가의 적절성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측정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 후 조사하고 총 평가결과 건수 중 몇 건이 적절한지를 평가	측정결과표를 100% 작성한 경우	☐ A
	측정결과표를 80%이상 100%미만 작성한 경우	☐ B
	측정결과표를 80%미만 작성한 경우	☐ C
※ 참고사항 : 연속 측정한 측정농도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라 초과여부를 평가한다(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 제33조) ※ 점검서류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5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20	외부분석기관 의뢰 시 해당 문서 보관 및 결과 적정 반영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시료분석의뢰 문서철 및 시료를 의뢰한 측정결과표(무작위 5개 선정)를 조사	5개의 측정결과표 중 5개 모두 적정한 경우	☐ A
	5개의 측정결과표 중 3~4개 적정한 경우	☐ B
	5개의 측정결과표 중 1~2개 적정한 경우	☐ C
※ 참고사항 : 시료를 의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A로 평가 (석면의 경우 위상차현미경과 그 부속품, 유리규산의 경우 X-선 회절분석기 또는 적외선분광분석기와 그에 따른 부속품, TDI는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산·알칼리의 경우 이온크로마토그래피 또는 그와 상응하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 ※ 점검서류 : 시료분석의뢰 문서철 및 관련 시료를 분석/의뢰한 측정결과표(석면, 유리규산, TDI 등)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21	시료 전달시 인수인계대장 작성·보관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측정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 후 조사하여 작성·보관하는 경우 몇 %가 인수인계 대장에 기록되는지를 조사	5개 모두 인수인계대장에 작성되어 있는 경우	☐ A
	3~4개 적정한 경우,	☐ B
	2개 이하가 적정한 경우 또는 인수인계 대장이 없는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1개의 측정결과표상 나타난 시료 중 90% 이상의 시료에 대해 인수인계 대장에 작성되어 있다면 그 결과표에 한해 100% 적정하다고 간주 ② 인수인계대장에는 인수일시, 시료명, 시료수, 측정자, 인계자, 인수자, 인수인계시 시료의 상태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점검서류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5부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22	실험실 시료관리대장 작성·보관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측정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 후 조사	5개 모두 적정한 경우	☐ A
	3~4개 적정한 경우	☐ B
	2개 이하 적정한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시료관리대장에는 시료도착일, 시료보존 방법, 시료저장방법, 시료채취대장에 명기된 시료와 일치 여부, 분석일, 분석방법 등의 기재여부에 따라 판단 ② 실험실 보관대장 미 작성의 경우 미 작성 사유 명기 ※ 점검서류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5부 및 실험실 시료관리대장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 실험실 시료관리대장 미 작성 사유 : _____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23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노출기준의 보정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작업시간이 8시간 이상인 측정 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를 선정하여 조사하고 보정하지 않는 경우 사유를 기록	100% 보정된 경우	☐ A
	미보정이 1건 발견된 경우	☐ B
	미보정이 2건 이상 발견된 경우	☐ C
※ 참고사항 :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정노출기준을 산출(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34조제3항) ※ 점검서류 :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작업환경측정결과표 5부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24	8시간 시간가중평균치의 적정 계산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측정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 후 조사(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결과표 포함)	모두 적정 계산된 경우	☐ A
	부적정한 계산이 1건 발견된 경우	☐ B
	부적정한 계산이 2건 이상 발견된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34조(입자상 물질 농도) 제2항 :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내 측정을 한 경우의 입자상 물질 농도는 측정시간 동안의 시간가중평균치를 산출하여 그 기간동안의 평균농도로 하고 이를 8시간 시간가중평균하여 8시간 작업시의 평균농도로 한다. ② 1개의 측정결과표상 나타난 모든 평가결과의 계산 중 90% 이상이 적정하면 그 결과표에 한해 모두 적정하다고 간주 ※ 점검서류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5부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25	작업환경측정 실시 사업장 현장 평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측정사업장 중 5(3)개소를 선정하여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실시	5(3)개의 사업장 중 4~5(3)개 모두 적정한 경우	☐ A
	5(3)개의 사업장 중 3(2)개 적정한 경우	☐ B
	5(3)개의 사업장 중 1~2(1)개 적정한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의4에 의거 신뢰성 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측정기관별 3~5개소를 선정하여 해당 공정에 대한 정밀측정을 통하여 측정농도의 적정성 평가 ② 공단 사업결과를 반영하여 평가 가능 ※ 점검서류 : -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3. 시설 · 장비의 성능 (22항목)

평가항목 3.1	측정장비 매뉴얼 · 이력 관리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측정장비의 매뉴얼, 장비 · 점검대장 등을 조사하여 주요 장비별로 전체 보유대수 중 몇 대가 관련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기록 유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	장비별로 대장을 보유하여 구입, 수리 및 정기 점검일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 A
	장비별 구입 및 수리여부 기록만 있는 경우		☐ B
	장비별 대장이 없거나 구입기록만 있는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대상 측정 장비는 개인시료채취기, 유량보정기, 지시소음계, 누적소음노출량계 ② 주요 장비에 대한 설명서, 구입, 수리 및 점검일자 등을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 ③ 기관이 보유한 주요 장비의 80% 이상이 관련대장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위 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80% 미만 시 어떤 경우라도 C로 판단 ※ 점검서류 : 측정 장비의 매뉴얼, 장비점검대장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 기록 유지를 하지 않는 사유 : _____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2	분석 장비 매뉴얼 · 이력 관리 및 기록유지의 적절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분석 장비의 매뉴얼, 장비 · 점검 대장 등을 조사하여 주요 장비 별로 전체 보유대수 중 몇 대가 관련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기록 유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	장비별로 대장을 보유하여 구입, 수리 및 정기 점검일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 A
	장비별 구입 및 수리여부 기록만 있는 경우	☐ B
	장비별 대장이 없거나 구입기록만 있는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대상 분석 장비는 광전분광광도계,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또는 GC/MS,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천칭 ② 주요 장비에 대한 설명서, 구입, 수리 및 점검일자 등을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 ③ 기관이 보유한 주요 장비의 80% 이상이 관련대장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위 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80% 미만 시 어떤 경우라도 C로 판단 ※ 점검서류 : 분석 장비의 매뉴얼, 장비·점검대장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 기록 유지를 하지 않는 사유 : _____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3	측정 장비의 신규 도입, 노후장비 교체 등 장비의 최신화 노력도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측정 장비 관리대장 및 자산관리 대장 등을 조사하여 대상 측정 장비 중 최신 장비의 비율이 몇 %인지를 파악	최신 장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 A
	최신 장비의 비율이 50~70% 인 경우	☐ B
	최신 장비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대상 측정 장비는 개인시료채취기, 유량보정기, 지시소음계, 누적소음노출량계 ② 최신 장비라 함은 최근 5년 이내에 생산된 장비를 말함. ※ 점검서류 : 측정 장비 관리대장, 자산관리대장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4	분석 장비의 신규 도입, 노후장비 교체 등 장비의 최신화 노력도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분석 장비 관리대장 및 자산관리 대장 등을 조사하여 대상 분석 장비 중 최신 장비의 비율이 몇 %인지를 파악	최신 장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 A
	최신 장비의 비율이 50~70% 인 경우	☐ B
	최신 장비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대상 분석 장비는 광전분광광도계,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또는 GC/MS,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천칭 ② 최신 장비라 함은 최근 10년 이내에 생산된 장비를 말함. ※ 점검서류 : 분석 장비 관리대장, 자산관리대장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5	시료채취 및 분석 장비에 대한 책임자 지정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책임자가 지정된 문서 등을 조사하여 파악	책임자가 지정된 경우	☐ A
	책임자가 일부 지정된 경우	☐ B
	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 C
※ 참고사항 : 책임자가 지정되었다는 것은 매뉴얼, 장비대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장비에 해당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 점검서류 : 책임자가 지정된 문서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6	시료채취 및 보정장비의 사용 및 운영지침(또는 매뉴얼) 보유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관리대장·매뉴얼 등을 조사하여 관련 장비들의 몇 %가 관련기록을 보유하고 있는지 기록	관련 장비들의 80% 이상이 사용 및 운영지침(또는 매뉴얼)이 있는 경우	☐ A
	그 외의 경우	☐ B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 C
※ 참고사항 : ※ 점검서류 : 시료채취장비 및 이에 관련된 보정장비 관리대장·매뉴얼 등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7	시료채취장비의 주기적인 유지·보수 수행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시료채취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대장 등을 조사하여 파악하고 기록 유지를 하지 않는 경우 사유를 기록	유지·보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A
	유지·보수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경우	☐ B
	유지·보수를 실시한 경험이 없는 경우	☐ C
※ 참고사항 : 기기판매회사를 포함한 시료채취장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파악 ※ 점검서류 : 시료채취장비 유지·보수대장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 기록·유지 하지 않는 사유 : _____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8	분석장비의 주기적인 유지·보수 수행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분석장비의 유지·보수대장 등을 조사하여 파악하고 기록 유지를 하지 않는 경우 사유를 기록	유지·보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A
	유지·보수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경우,	☐ B
	유지·보수를 실시한 경험이 없는 경우	☐ C
※ 참고사항 : 기기판매회사를 포함한 분석장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파악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 기록·유지 하지 않는 사유 : _____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9	필수 장비 이외의 측정 및 분석 장비 보유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장비 목록에 기재된 장비의 보유 여부를 직접 확인	4종 이상 보유한 경우	☐ A
	1~3종 보유한 경우	☐ B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경우	☐ C
	(장비목록)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또는 LC/MS, X-선 회절기(XRD), 적외선분광분석기(FTIR) 또는 IR/MS,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또는 IC/MS, GC-질량분석기(GC/MS), 석면분석에 필요한 장비 및 부속품(PCM, PLM, EM 등), 유도결합플라즈마(ICP) 또는 ICP/MS, 진동측정이 가능한 주파수분석기 또는 방사선 측정장비	
※ 참고사항 : ① 공동 기기 실습실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불인정 ② 기기를 확인한 후 평가기준에 표시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10	검·교정 장비에 관한 문서 보관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정기적인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와 관련된 문서를 조사	정기적인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와 관련된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A
	정기적인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와 관련된 문서를 보유한 경험이 있는 경우	☐ B
	정기적인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와 관련된 문서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 C
※ 참고사항 : 정기적인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라 함은 공기시료채취기·누적소음노출량계 Calibrator ※ 점검서류 :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와 관련된 문서 또는 서류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11	국내·외 공인시험·교정 및 검사기관에서의 인정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국내·외 공인시험·교정 및 검사기관에서 인정받은 경우 인정서 등을 조사하여 기록	인정서를 인정 받은 경우	☐ A
	인정서를 인정후 반납·취소된 경우	☐ B
	인정서를 인정받은 적이 없는 경우	☐ C
※ 참고사항 : 국내·외 공인시험·교정기관 및 검사기관은 KOLAS, ILAC, APLAC, NACLA, NATA, EN 45003 및 ISO Guide 58 등을 의미 ※ 점검서류 : 인정서 등의 기록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12	측정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실시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검·교정 대상 측정 장비를 조사하여 평가하고 실시하는 경우, 실시기록을 조사하여 전체보유 대수 중 몇 대를 검·교정 하는지를 그 건수를 장비별로 기록	전체보유 측정 장비 대수 중 80%이상 검·교정을 실시한 경우	☐ A
	전체보유 측정 장비 대수 중 50~80%미만 검·교정을 실시한 경우	☐ B
	전체보유 측정 장비 대수 중 50%미만 검·교정을 실시한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검·교정 대상 측정 장비(1회/3년 이상) : 유량계, 표준소음발생기, 열선풍속계 ② 자체 교정을 실시한 경우와 판매회사에 의뢰하여 교정한 경우는 인정 ※ 점검서류 : 관련 기록물 또는 공문 등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13	전자저울 등의 분석기기 검·교정 실시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검·교정 대상 분석 기기를 조사하여 평가하고 실시하는 경우, 실시기록을 조사하여 전체보유 대수 중 몇 대를 검·교정 하는지를 그 건수를 장비별로 기록	전체보유 분석 기기 대수 중 80%이상 검·교정을 실시한 경우	☐ A
	전체보유 분석 기기 대수 중 50~80%미만 검·교정을 실시한 경우	☐ B
	전체보유 분석 기기 대수 중 50%미만 검·교정을 실시한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검·교정 대상 분석 기기 : 전자저울(천평), GC, AA, 광전분광광도계 ② 자체 교정을 실시한 경우와 판매회사에 의뢰하여 교정한 경우는 인정 ※ 점검서류 : 관련 기록물 또는 공문 등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14	직독식 장비의 사용, 운반, 보관, 유지·관리에 대한 적정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직독식 장비에 대한 사용실적 및 관리대장 구비여부를 확인 후 평가	직독식 장비의 사용, 운반, 보관, 유지·관리가 적정한 경우	☐ A
	그 외의 경우	☐ B
	관련사실을 확인 불가한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직독식 장비라 함은 “산소농도 측정기, 검지관 세트, 열선풍속계, 회전계(RPM 측정기)”를 의미 ② 산소농도측정기 경우 측정센서의 주기적 교환 여부를 확인 ③ 검지관 경우 보관장소(냉암소)의 적정성여부 및 유효기간 준수여부를 감안하여 평가 ※ 점검서류 : 직독식 장비 관리대장 등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15	각 분석 장비별 실험실용 후드장치 설치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장비별 후드 설치여부 확인	후드가 설치되고 제어풍속이 적정한 경우	☐ A
	후드는 설치되어 있으나, 제어풍속 미만인 경우	☐ B
	후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C
※ 참고사항 : 각 분석장비라 함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와 원자흡광분광기를 의미 ※ 점검서류 : 장비에 부착된 후드 등을 육안으로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16	분석 중 배기, 배액 처리 설비의 적정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설비를 직접 확인한 후 기록	배액처리 설비 및 관리대장이 있는 경우	☐ A
	배액처리 설비는 있으나,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 B
	배액처리 설비가 없고, 관리대장도 없는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분석을 행함에 있어 유해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기 또는 배액처리를 위한 설비를 구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② 배액처리 설비는 외부 위탁처리하는 경우도 인정(처리실적 확인) ※ 점검서류 : 육안으로 확인 후 조사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17	실험실내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보유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설비를 직접 확인한 후 기록	비상용 샤워 또는 세안설비를 보유하고 작동 상태가 양호한 경우	☐ A
	비상용 샤워 또는 세안설비가 작동이 잘되지 않는 경우	☐ B
	비상용 샤워 또는 세안설비가 없는 경우	☐ C
※ 참고사항 : ※ 점검서류 : 육안으로 확인 후 기록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18	실험실내 가스용기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설비를 직접 확인하여 조치여부를 판단한 후 기록	모든 가스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한 경우	☐ A
	일부 가스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한 경우	☐ B
	전도방지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 C
※ 참고사항 : ※ 점검서류 : 육안으로 확인 후 기록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19	실험에 사용하는 시약의 특성에 따른 적정 보관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캐비넷 등을 직접 확인한 후 기록	특성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 A
	일부 시약에 대해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	☐ B
	특성에 따라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시약의 특성이라 함은 인화성, 폭발성 등을 의미 ② 적정 보관은 전용 캐비넷 사용 등을 감안하여 판단 ※ 점검서류 : 육안으로 확인 후 기록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20	실험실 보건안전 적정 여부 및 지침(수칙)의 문서화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보건안전지침 및 상태를 확인하여 기록	지침이 문서화되어 있고 그에 따른 상태가 적절한 경우	☐ A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으나 보건안전상태가 적절한 경우	☐ B
	문서화도 되어있지 않고 상태도 불량한 경우	☐ C
※ 참고사항 : 보건안전지침 및 상태라 함은 다음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① 화학물질의 누출이나 전기설비의 누전등 사고시 행동요령 ② 각 분석장비별 실험실용 후드장치 설치 ③ 분석용 유해물질의 배기 또는 배액처리 ④ 실험실내 비상용 샤워와 세안설비 ⑤ 실험실내 가스용기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⑥ 실험실내 착용 가능한 전용 보호용구의 구비 ※ 점검서류 : 보건안전지침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21	실험실내 보호용구 구비의 적정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보호 용구를 확인하여 기록	보호용구를 종류별로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경우	☐ A
	3종 이상 구비하고 있는 경우	☐ B
	3종 미만으로 구비된 경우	☐ C
※ 참고사항 : 보호용구의 종류라 함은 보안경,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유기용제용 장갑, 실험복 등을 의미 ※ 점검서류 : 육안으로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22	시료보관 냉장실 및 냉동실 적정 운영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냉장·냉동실을 직접 확인하여 시료 이외의 음료, 음식물 등 보 관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냉장실 또는 냉동실에 시료 이외의 것이 보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 A
	냉장실 또는 냉동실에 시료 이외의 것이 보관 되어 있는 경우	☐ B
	냉장실 및 냉동실 모두 시료 이외의 것이 보관 되어 있는 경우	☐ C
※ 참고사항 : ※ 점검서류 : 육안으로 확인 후 판단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4. 보유 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20문항)

평가항목 4.1	측정 및 분석요원의 교육·훈련계획 등의 문서 보유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보유한 경우, 기록을 조사하여 기록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A
	문서를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 B
	문서가 없는 경우	☐ C
※ 참고사항 : ※ 점검서류 : 최근 2년 이내의 교육과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계획 등이 포함된 문서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2	지정측정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문서화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지정측정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문서화된 기록을 조사	기관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경우	☐ A
	하나만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	☐ B
	모두 문서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	☐ C
※ 참고사항 : 조직도의 경우 측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총괄책임자, 작업환경 측정의 계획, 결과 평가에 관한 책임자, 정도관리 책임자 등도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직원들의 학력, 경력사항도 포함되어야 함 ※ 점검서류 : 조직도 및 업무분장 문서화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3	지정 측정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기록을 조사하여 기록	1년에 2회 이상	☐ A
	1년에 1회	☐ B
	교육 이수가 없는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횟수는 1인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2인이 각 년1회씩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1년 2회 이상으로 간주 ② 전문교육이라 함은 관련학술대회 참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 지정교육기관에 의한 교육을 의미 ※ 점검서류 : 전문교육 이수와 관련된 공문, 영수증, 수료증 등을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4	지정 분석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기록을 조사하여 기록	1년에 2회 이상	☐ A
	1년에 1회	☐ B
	교육 이수가 없는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횟수는 1인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2인이 각 년1회씩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1년 2회 이상으로 간주 ② 전문교육이라 함은 관련학술대회 참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 지정교육기관에 의한 교육을 의미 ※ 점검서류 : 전문교육 이수와 관련된 공문, 영수증, 수료증 등을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5	측정 및 분석요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전문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책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조사	기관장이 2건 이상 지원하고 있는 경우	☐ A
	기관장의 지원이 1건이라도 있는 경우	☐ B
	기관장의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	☐ C
※ 참고사항 : 최근 2년 이내에 측정·분석요원 등에 대하여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간적 배려, 대학 등의 강의 활동 지원, 학원 수강시 금전적 지원 등을 포괄하여 판단 ※ 점검서류 :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서류(학원 수강증, 수강료 영수증 등)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6	측정기관 지정인력의 최근 2년간 연구실적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연구실적물을 확인하여 조사	연구실적이 2건 이상인 경우	☐ A
	연구실적이 1건 있는 경우	☐ B
	연구실적이 없는 경우	☐ C
※ 참고사항 : 연구실적이란 산업보건 관련학회(한국산업위생학회, 대한산업의학회, 예방의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실내공기질학회, 독성학회 등)의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의 발표자료집 등을 의미 ※ 점검서류 : 학회지, 학술대회 연제집 등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7	측정 및 분석 인력의 자기계발 실적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최근 2년간 전문 인력의 자기계발 실적(상위학위 및 자격증 취득)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조사	자기계발 실적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 A
	자기계발 실적이 1건이라도 있는 경우	☐ B
	자기계발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 C
※ 참고사항 : 측정·분석 인력이 상위학위를 취득하거나 업무관련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를 확인 ※ 점검서류 : 자기계발 실적 증빙서류(자격증 및 학위취득 서류 등)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8	측정 및 분석 인력의 각종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율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최근 2년간 전문 인력이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한 실적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조사	측정 및 분석 인력의 50% 이상이 관련 학술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경우	☐ A
	측정 및 분석 인력의 30~50% 가 관련 학술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경우	☐ B
	측정 및 분석 인력이 관련 학술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30% 미만인 경우	☐ C
※ 참고사항 : - ※ 점검서류 : 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 증빙서류(등록비 납입 영수증 등)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9	자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 실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지정측정기관 내부에 측정 및 분석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학습조직이 운영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조사	자체 세미나 및 학습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 A
	자체 세미나 및 학습조직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	☐ B
	자체 세미나 및 학습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 C
※ 참고사항 : - ※ 점검서류 : 최근 2년 이내에 자체 세미나 및 학습조직 운영 관련 서류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10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작성, 검토, 승인라인의 적정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측정결과표 5개를 무작위 추출하여 문서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의 명확한 구분 및 결재여부를 확인하고 판단	측정결과표 5개 모두 적정한 경우	☐ A
	측정결과표 5개 중 3-4개가 적정한 경우	☐ B
	측정결과표 5개 중 2개 이하가 적정한 경우	☐ C
※ 참고사항 : ※ 점검서류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5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11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 노력도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평가	전체 측정 사업장 중 ()% 이상 개최한 경우	☐ A
	(~)%인 경우	☐ B
	()%미만인 경우	☐ C
※ 참고사항 : 해당 % 기준은 미정(설명회 등을 통하여 최종 확정) ※ 점검서류 :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 증빙자료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12	기관 자체 제작한 안내 팸플렛 등의 보유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팸플렛 또는 리플렛 등을 조사하여 기록	2년 이내 제작·배포한 경우	☐ A
	2년 이전 제작·배포한 경우	☐ B
	제작 실적이 없는 경우	☐ C
※ 참고사항 : 최근 3년 이내의 기록을 확인 ※ 점검서류 : 팸플렛, 리플렛 등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13	시약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나 독성 및 기타자료 확보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시약 5종 무작위 선정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	5종 모두 확보하고 있는 경우	☐ A
	3~4종 확보하고 있는 경우	☐ B
	2종 이하 확보하고 있는 경우	☐ C
※ 참고사항 : ※ 점검서류 : 해당 시약의 MSDS 자료 등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14	시약·물품의 선정, 구매 및 보관절차의 문서화/전산화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시약·물품 등의 보관대장(파일) 및 시약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자료를 조사	시약·물품의 구매일자, 구매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는 보관대장(파일) 및 MSDS를 보유하는 경우	☐ A
	해당시약의 MSDS만을 보유하는 경우	☐ B
	전혀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C
※ 참고사항 : ※ 점검서류 : 시약·물품 보관대장 또는 전산자료(엑셀/한글 파일 등) 및 시약에 대한 MSDS 자료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15	작업환경측정 결과 관련 기록의 보존기한 준수 및 관리상태 적정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측정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하여 조사	5개의 측정결과표 중 5개 모두 관련된 기록이 보존되는 경우	☐ A
	5개의 측정결과표 중 3~4개 적정한 경우	☐ B
	5개의 측정결과표 중 2개 이하가 적정한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측정결과표의 보존기한(3년, 발암성 30년) 명시 및 상시 열람이 가능한 환경 내 보관여부 검토 ② 1개의 측정결과표상 나타난 관련기록 중 90% 이상의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다면 그 결과표에 한해 100% 보관되어 있다고 간주 ※ 점검서류 : 가급적 발암성물질이 있는 측정결과표 5부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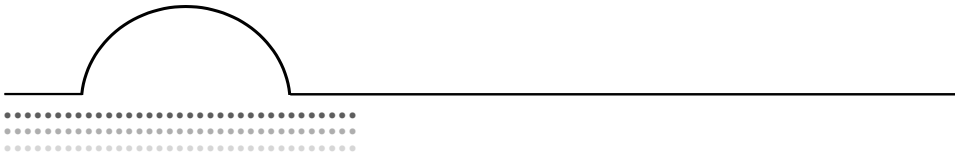
평가항목 4.16	표준물질 유효기간의 준수 및 문서화(전산화)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시약 및 표준물질 5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유효기간 준수 및 문서화 여부를 조사	시약 및 표준물질의 유효기간 표시가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	☐ A
	유효기간 준수 또는 문서화중 1개만 관리되고 있는 경우	☐ B
	그 이외의 경우	☐ C
※ 참고사항 : 시약 및 표준물질 5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유효기간 준수여부 확인 ※ 점검서류 : 문서대장 또는 전산자료(한글/엑셀 등) 조사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17	측정기관 홈페이지 보유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조사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A
	홈페이지를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 B
	홈페이지를 보유한 적이 없는 경우	☐ C
※ 참고사항 : - ※ 점검서류 : -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18	기관 또는 보유인력의 표창 등 실적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최근 2년 이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표창실적을 확인하여 평가 실적이 있는 경우, 기록을 조사	2회 이상인 경우	☐ A
	1회인 경우	☐ B
	실적이 없는 경우	☐ C
※ 참고사항 : 산업위생과 관련이 없는 표창은 제외 ※ 점검서류 : 표창 원본 및 사본(표창명 : _____, 수여년도 : _____)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19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송부기간 준수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측정결과표를 무작위로 5개 선정 후 조사	항상 준수하는 경우		☐ A
	준수하지 못한 1건이 확인된 경우		☐ B
	2건 이상 준수하지 못한 경우		☐ C
※ 참고사항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39조(작업환경측정결과표 작성) 제1항 : 사업장위탁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을 때는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2부는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함 ※ 점검서류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5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20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실시율(가점 항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전체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중 10인 미만 사업장 비율 확인	전체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중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1점
	전체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중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 0.5점
	전체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중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 0점
※ 참고사항 : 공단으로 송부된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평가 ※ 점검서류 : 기관별 전체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목록 전산 자료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지정특검기관 평가표(안)

지정특검기관 평가표(안)

기 관 명			
소 재 지	(-)		
관 할(지)청		총인원 : ____명	의사 : ____ 명
			간호사 : ____ 명
대 표 자			임상병리사 : ____ 명
전화번호			방사선사 : ____ 명
			산업위생기사 : ____ 명
지정일자	최초지정일 : 변경지정일 :		

방 문 일	2010 년 월 일
-------	----------------------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평가운영반원			
평가운영반원			
평가운영반원			
평가운영반원			
평가운영반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특수건강진단기관>

A : 5점, B: 3점, C : 1점

구 분	세부평가 항목	기준치	평가	최고점수
1. 건강진단 분석능력	1.1.1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필름/증감지조합 적합 여부)	0.5	A, B, C	2.5
	1.1.2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필름/증감지 밀착성)	0.5	A, B, C	2.5
	1.2.1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검사표지 : 이름)	0.5	A, B, C	2.5
	1.2.2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검사표지 : 성별, 나이)	0.5	A, B, C	2.5
	1.2.3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검사표지 : 촬영일자)	0.5	A, B, C	2.5
	1.2.4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검사표지 : 회사별 근로자 일련번호)	0.5	A, B, C	2.5
	1.2.5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검사표지 : 홍부)	0.5	A, B, C	2.5
	1.2.6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위치표시)	0.5	A, B, C	2.5
	1.2.7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현상조건)	0.5	A, B, C	2.5
	1.2.8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인공물)	0.5	A, B, C	2.5
	1.2.9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늑골, 횡경막각 포함)	0.5	A, B, C	2.5
	1.2.10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환자자세 : 좌우대칭)	0.5	A, B, C	2.5
	1.2.11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환자자세 : 견갑골 위치)	0.5	A, B, C	2.5
	1.2.12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흡기정도)	0.5	A, B, C	2.5
	1.2.13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인공음영 : 폐야내 인공물)	0.5	A, B, C	2.5
	1.2.14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인공음영 : 영상의 흔들림)	0.5	A, B, C	2.5
	1.2.15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 우측)	0.5	A, B, C	2.5
	1.2.16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 좌측)	0.5	A, B, C	2.5
	1.2.17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 심장위 폐혈관 및 하행 대동맥)	0.5	A, B, C	2.5
	1.2.18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 횡경막 하방 혈관)	0.5	A, B, C	2.5
	1.2.19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 횡경막 상방 외측 늑골연)	0.5	A, B, C	2.5
	1.2.20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 횡경막 양측)	0.5	A, B, C	2.5
	1.2.21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 추간관 공간)	0.5	A, B, C	2.5
	1.2.22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 대엽성 기관지)	0.5	A, B, C	2.5
	1.3.1진폐정도관리(폐활량 검사: 참고사항 파악)	0.5	A, B, C	2.5
	1.3.2 진폐정도관리 (폐 활량 검사 : 실시 횟수)	0.5	A, B, C	2.5
	1.3.3 진폐정도관리(폐 활량 검사:적합성 평가)	0.5	A, B, C	2.5
	1.3.4 진폐정도관리(폐 활량 검사 : 재현성 평가)	0.5	A, B, C	2.5

구 분	세부평가 항목	기준치	평가	최고점수
	1.4.1 청력정도관리 (2차 검사 시행의 적정성)	0.5	A, B, C	2.5
	1.4.2 청력정도관리 (적절한 골도 청력검사 수행)	0.5	A, B, C	2.5
	1.4.3 청력정도관리 (적절한 기도 음차폐 검사)	0.5	A, B, C	2.5
	1.4.4 청력정도관리 (적절한 골도 음차폐 검사)	0.5	A, B, C	2.5
	1.5.1 분석정도관리 (유기분야) 분석정도관리(분석 능력)	0.5	A, B, C	2.5
	1.5.2 분석정도관리 (무기분야)	0.5	A, B, C	2.5
	1.5.3 분석정도관리 (분석 값)	0.5	A, B, C	2.5
	1.5.4 분석정도관리(자율항목)	0.5	A, B, C	2.5
	1.5.5 분석정도관리 (자율항목 분석 적합 항목 수)	0.5	A, B, C	2.5
	1.5.6 분석정도관리(내부정도관리 : 무기분석)	0.5	A, B, C	2.5
	1.5.7 분석정도관리 (내부정도관리 : 유기분석)	0.5	A, B, C	2.5
	1.5.8 분석정도관리 (외부정도관리)	0.5	A, B, C	2.5
총 40문항		총점 100 점		
2.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2.1.1 사전조사(사업주로부터 대상자 명단 확보)	0.83	A, B, C	4.15
	2.1.2 사전조사(기관에서 대상 파악 적극성)	0.83	A, B, C	4.15
	2.1.3 사전조사(산업의학 전문의 검토)	0.83	A, B, C	4.15
	2.1.4 사전조사(실무자 검토)	0.83	A, B, C	4.15
	2.2.1 문진(직업력 조사)	0.83	A, B, C	4.15
	2.2.2 문진(병력조사)	0.83	A, B, C	4.15
	2.2.3 문진(유해요인 증상조사)	0.83	A, B, C	4.15
	2.2.4 문진(문진결과와 활용)	0.83	A, B, C	4.15
	2.2.5 문진 (이학적 검사)	0.83	A, B, C	4.15
	2.3.1 청력검사 (일치성)	0.83	A, B, C	4.15
	2.3.2 청력검사자 (자격)	0.83	A, B, C	4.15
	2.3.3 청력검사 (시행시기 통보)	0.83	A, B, C	4.15
	2.4.1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 (지침서 보유)	0.83	A, B, C	4.15
	2.4.2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 (채취 방법)	0.83	A, B, C	4.15
	2.4.3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 (톨루엔 채취 시간)	0.83	A, B, C	4.15
	2.5.1 건강진단 결과 (판정)	0.83	A, B, C	4.15
	2.5.2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 방법)	0.91	A, B, C	4.55
	2.5.3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	0.83	A, B, C	4.15
	2.6 특수건강진단 결과 설명회 개최 노력도	0.83	A, B, C	4.15
	2.7 청력정도관리 - 판정의 적정성 (판정의 신뢰도)	0.83	A, B, C	4.15
	2.8 건강진단 결과표 송부의 신속성	0.83	A, B, C	4.15
	2.9 진단검사 시료 보관에 관한 지침서	0.83	A, B, C	4.15
	2.10 진단·기능검사의 관리에 관한 지침서 (시설장비유지관리)	0.83	A, B, C	4.15

구 분	세부평가 항목	가중치	평가	최고점수
	2.11 특수건강진단 검진 및 판정의 지침서 또는 매뉴얼	0.83	A, B, C	4.15
총 24 문항		총 점 100점		
		가산점 1 (총점 :101)		
3. 시설·장비의 성능	3.1.1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내부정도관리 : Densitometer측정)	1	A, B, C	5
	3.1.2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내부정도관리 : 시설 장비의유지보수)	1	A, B, C	5
	3.2.1 폐활량검사 (장비 보유 및 유지)	1	A, B, C	5
	3.2.2 폐활량검사 (감염예방 조치)	1	A, B, C	5
	3.2.3 폐활량검사 (일회용 필터 사용)	2	A, B, C	10
	3.2.4 폐활량검사 (표준 매뉴얼)	1	A, B, C	5
	3.2.5 폐활량검사 (보정 기록)	1	A, B, C	5
	3.2.6 폐활량검사 (검사실)	1	A, B, C	5
	3.3.1 청력 검사실 및 부스	1	A, B, C	5
	3.3.2 청력 검사기 보정점검	1	A, B, C	5
	3.4.1 분석정도관리 (표준 분석 지침)	1	A, B, C	5
	3.4.2 분석정도관리 (장비 사용 지침)	1	A, B, C	5
	3.4.3 분석정도관리 (장비 사용 대장)	1	A, B, C	5
	3.4.4 분석정도관리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 평가)	2	A, B, C	10
	3.4.5 분석정도관리 (시약 보관)	1	A, B, C	5
	3.4.6 분석정도관리(화학 저울 검정 및 교정)	1	A, B, C	5
	3.4.7 분석정도관리 (국소 배기)	1	A, B, C	5
	3.4.8 분석정도관리 (실험실 온도 및 습도)	1	A, B, C	5
총 18개 문항		총 점 100점		
4. 보유 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 사항	4.1.1 외부 연수교육 (의사)	1	A, B, C	5
	4.1.2 외부 연수교육 (특수건강진단 업무 간호사)	1	A, B, C	5
	4.1.3 외부 연수교육 (특수건강진단 업무 임상병리사)	1	A, B, C	5
	4.1.4 외부 연수교육 (특수건강진단 업무 방사선사)	1	A, B, C	5
	4.2 특수건강진단 업무 관련 종사자 내부 직무교육	1	A, B, C	5
	4.3 특수건강진단 업무 관련 종사자의 교육계획수립 여부	1	A, B, C	5
	4.4 특수건강진단 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각 해당 학술세미나 참여 여부	1	A, B, C	5
	4.5 내부 특수건강진단 질향상위원회 설치와 개선활동	1	A, B, C	5
	4.6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의 권리와 책임	1	A, B, C	5
	4.7 건강진단시 직원 신분 공개	1	A, B, C	5
	4.8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	1	A, B, C	5
	4.9 고객 만족도 조사와 관련 개선활동 여부	1	A, B, C	5
	4.10.1 기록 (총실성)	2	A, B, C	10
	4.10.2 기록(문진결과 전산입력 관리)	1	A, B, C	5
	4.10.3 기록(건강진단 기록 검색의 신속성 및 효율성)	1	A, B, C	5

구 분	세부평가 항목	가중치	평가	최고점수
	4.10.4 기록(건강진단 기록의 관리)	2	A, B, C	10
	4.11 검체 관리의 적절성	1	A, B, C	5
	4.12 검사 외부 의뢰 체계	1	A, B, C	5
총 18개 문항		총 점 100점		

가점항목 - A : 1점, B : 0.5점, C : 0점

구 분	가점 분야 세부평가 항목	가중치	평가	최고점수
2.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2.12 건강진단 결과 판정의 외부 전문가 검토 (가점)		A, B, C	1
	총 1문항	총점 1 점		
4. 보유 인력 의 교육이 수·능력개 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 사항	4.13 소규모 사업장 건강진단 실시율 (가점)		A, B, C	1
	4.14 특수건강진단 인력 (가점)		A, B, C	1
	4.15 산업의학과 외래 개설 (가점)		A, B, C	1
	4.16 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지원 (가점)		A, B, C	1
총 4문항		총점 4점		

1. 건강진단분석능력

평가항목 1.1.1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필름/증감지 조합 적합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필름/증감지 조합 적합 여부를 흉부사진 자료를 통해 평가 (필름/스크린 시스템)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5매 모두에서 조합 적합	☐ A
		☐ B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4매 이하에서 조합 적합	☐ C
※ 참고사항 : 흉부촬영시 넓은 관용도의 전용 필름 및 증감지의 증감지를 사용해야 함. 필름 테두리에 증감지 및 필름 모델명을 확인 - 필름 : 후지 HR-C, 후지 UR-1, 코니카 MGT-SR, 아그파 OPTH-H, 아그파 HT-C, 코닥 T-MAT L/RA, 코닥 Insight thoracic imaging 등 - 증감지 : 후지 HR-MEDIUM, 후지 HG-M2, 코니카 KM-II, 아그파 ORTHO-MD, 코닥 LANEX-MEDIUM, 코닥 Insight thoracic imaging, 도시바 TO 220 등 ※ 점검서류 :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원내촬영 5매, 원외촬영 5매)로 평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1.2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필름/증감지 밀착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필름/증감지 밀착성 여부를 흉부사진 자료를 통해 평가 (필름/스크린 시스템)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4매 이상에서 밀착성 좋음	☐ A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에서 밀착성 좋음	☐ B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 미만에서 밀착성 좋음	☐ C
※ 참고사항 : 흉부촬영시 사용하는 필름과 증감지의 밀착성이 좋아야함. 좋지 않은 밀착성은 필름 테두리의 글씨가 흔들려 보이는 곳이 있는지를 확인함 ※ 점검서류 :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원내촬영 5매, 원외촬영 5매)로 평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2.1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검사표지 : 이름)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검사표지에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5매 모두에서 포함되어 있음	☐ A
		☐ B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4매 이하에서 포함되어 있음	☐ C
※ 참고사항 : 흉부방사선 사진의 검사표지에는 피검자 이름이 포함되어야 함 ※ 점검서류 :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원내촬영 5매, 원외촬영 5매)로 평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2.2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검사표지 : 성별, 나이)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검사표지에 ①성별 ②나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5매 모두에서 포함되어 있음	☐ A
		☐ B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4매 이하에서 포함되어 있음	☐ C
※ 참고사항 : 흉부방사선 사진의 검사표지에는 나이(주민번호도 인정)/성별이 포함되어야 함 ※ 점검서류 :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원내촬영 5매, 원외촬영 5매)로 평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2.3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검사표지 : 촬영일자)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검사표지에 촬영일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5매 모두에서 포함되어 있음	☐ A
		☐ B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4매 이하에서 포함되어 있음	☐ C
※ 참고사항 : 흉부방사선 사진의 검사표지에는 촬영일자가 포함되어야 함 ※ 점검서류 :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원내촬영 5매, 원외촬영 5매)로 평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2.4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검사표지 : 회사별 근로자 일련번호)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검사표지에 회사별 근로자 일련번호가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5매 모두에서 포함되어 있음	☐ A
		☐ B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4매 이하에서 포함되어 있음	☐ C
※ 참고사항 : 흉부방사선 사진의 검사표지에는 회사별 근로자 일련번호(병원의 개인등록번호도 인정)가 포함되어야 함 ※ 점검서류 :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원내촬영 5매, 원외촬영 5매)로 평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2.5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검사표지 : 흉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검사표지가 흉부(늑골 포함)를 가리지 않는 지 평가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4매 이상에서 가리지 않음	☐ A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에서 가리지 않음	☐ B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 미만에서 가리지 않음	☐ C
※ 참고사항 : 흉부방사선 사진의 검사표지가 흉부를 가리면 안된다. ※ 점검서류 :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원내촬영 5매, 원외촬영 5매)로 평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2.6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위치표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좌우표시(Marking)가 흉부방사선 사진에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5매 모두에서 포함되어 있음	☐ A
		☐ B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4매 이하에서 포함되어 있음	☐ C
※ 참고사항 : 흉부방사선 사진에는 좌우를 표시하는 Marking이 영상에 포함되어야 함 ※ 점검서류 :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원내촬영 5매, 원외촬영 5매)로 평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2.7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현상조건)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흉부방사선 사진에 노화(황화) 현상이 없는지 평가 (필름/스크린 시스템)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4매 이상에서 없음	☐ A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에서 없음	☐ B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 미만에서 없음	☐ C
※ 참고사항 : 흉부방사선 사진에는 현상 및 정착 약품을 오랜 기간 사용하거나 수세 부족 시 노화 현상이 발생하여 변색되면 판독에 어려움이 많음 ※ 점검서류 :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원내촬영 5매, 원외촬영 5매)로 평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2.8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인공물)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흉부방사선 사진에 ① 피검자의 의복 ②부착물 ③머리카락 등의 인공물이 모두 없는지 평가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4매 이상에서 모두 없음	☐ A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에서 모두 없음	☐ B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 미만에서 모두 없음	☐ C
※ 참고사항 : 흉부방사선 사진에는 판독에 장애가 되는 인공물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안됨 ※ 점검서류 :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원내촬영 5매, 원외촬영 5매)로 평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2.9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늑골,횡격막각 포함)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흉부방사선 사진에 상 ①제1늑골 ②좌우 전 체 늑골 ③횡격막각 하방 3cm이상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4매 이상에서 모두 포함되어 있음	☐ A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에서 모두 포함되어 있음	☐ B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 미만에서 모두 포함되어 있음	☐ C
※ 참고사항 : 흉부방사선 사진에는 많은 정보를 보기위해 전체 폐야, 늑골 등이 잘리지 않아야 함 ※ 점검서류 :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원내촬영 5매, 원외촬영 5매)로 평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2.10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환자자세 : 좌우대칭)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흉부방사선 사진에 흉 추 극돌기와 양쪽쇄골 내단과의 거리가 동일 하여(거리비율 1:1) 좌 우가 대칭 되어 있는 지 평가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4매 이상에서 좌우대칭	☐ A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에서 좌우대칭	☐ B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 미만에서 좌우대칭	☐ C
※ 참고사항 : 흉부방사선 사진에는 정확한 판독을 위해 폐야의 좌우가 대칭되어 보여야 함 ※ 점검서류 :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원내촬영 5매, 원외촬영 5매)로 평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2.11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환자자세 : 견갑골 위치)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견갑골이 폐야 밖으로 위치하고 있는지 평가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4매 이상에서 폐야밖 위치	☐ A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에서 폐야밖 위치	☐ B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 미만에서 폐야밖 위치	☐ C
※ 참고사항 : 흉부방사선 사진에는 견갑골이 폐야 밖으로 완전히 빠져 폐야를 보는데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함 ※ 점검서류 :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원내촬영 5매, 원외촬영 5매)로 평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2.12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흡기정도)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흉부방사선 사진의 정상흡기 정도를 쇄골중심부에서 수직선을 그려 그 선이 우측횡격막과 만나는 점이 제 9-10늑골 후방의 하연보다 낮은지 평가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4매 이상에서 낮음	☐ A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에서 낮음	☐ B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 미만에서 낮음	☐ C
※ 참고사항 : 흉부방사선 사진은 최대한 흡기 상태에서 촬영하여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점검서류 :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원내촬영 5매, 원외촬영 5매)로 평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2.13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인공음영 : 폐야내 인공물)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홍부방사선 사진의 폐야내에 (점, 로울러자국, 긁힘, 얼룩 등) 인공물이 없는지 평가	홍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4매 이상에서 인공물 없음	☐ A
	홍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에서 인공물 없음	☐ B
	홍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 미만에서 인공물 없음	☐ C
※ 참고사항 : 홍부방사선 사진에는 판독에 장애가 되는 점, 로울러자국, 긁힘, 얼룩 등 인공물이 없어야 함 ※ 점검서류 : 홍부방사선사진 촬영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원내촬영 5매, 원외촬영 5매)로 평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2.14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인공음영 : 영상의 흔들림)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홍부방사선 사진에서 호흡 및 움직임에 의한 폐야의 영상의 흔들림이 없는지 평가	홍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4매 이상에서 흔들림 없음	☐ A
	홍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에서 흔들림 없음	☐ B
	홍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 미만에서 흔들림 없음	☐ C
※ 참고사항 : 피검자의 호흡 및 움직임에 의한 폐야영상의 흔들림이 없어야함 ※ 점검서류 : 홍부방사선사진 촬영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원내촬영 5매, 원외촬영 5매)로 평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2.15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 우측)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흉부방사선 사진의 우측폐야 전체에서 폐혈관의 관찰이 폐야외측 1/3부위의 폐혈관까지 관찰이 가능한지 평가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각각 5매에서 관찰이 가능함	☐ A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각각 4매 이상에서 관찰이 가능함	☐ B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각각 3매 이하에서 관찰이 가능함	☐ C
※ 참고사항 : 흉부방사선 사진은 좌/우폐야 전체에서 폐혈관 관찰이 가능해야 함 ※ 점검서류 :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원내촬영 5매, 원외촬영 5매)로 평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2.16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 좌측)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흉부방사선 사진의 좌측폐야 전체에서 폐혈관의 관찰이 폐야외측 1/3부위의 폐혈관까지 관찰이 가능한지 평가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4매 이상에서 관찰이 가능함	☐ A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에서 관찰이 가능함	☐ B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 미만에서 관찰이 가능함	☐ C
※ 참고사항 : 흉부방사선 사진은 좌/우폐야 전체에서 폐혈관 관찰이 가능해야 함 ※ 점검서류 :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원내촬영 5매, 원외촬영 5매)로 평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2.17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 심장뒤 폐혈관 및 하행 대동맥)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심장뒤 폐혈관 및 하행 대동맥이 선명하게 잘 보이는지 평가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4매 이상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	☐ A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	☐ B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 미만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	☐ C
※ 참고사항 : 흉부방사선 사진은 심장뒤 폐혈관 및 대동맥이 선명하게 잘 보여야 함 ※ 점검서류 :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원내촬영 5매, 원외촬영 5매)로 평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2.18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 횡격막 하방 혈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횡격막 하방 혈관이 선명하게 잘 보이는지 평가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4매 이상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	☐ A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	☐ B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 미만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	☐ C
※ 참고사항 : 흉부방사선 사진은 횡격막 하방 혈관이 선명하게 잘 보여야 함 ※ 점검서류 :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원내촬영 5매, 원외촬영 5매)로 평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2.19	흉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 횡격막 상방 외측 늑골연)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횡격막 상방의 외측 늑골연이 선명하게 잘 보이는지 평가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4매 이상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	☐ A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	☐ B
	흉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 미만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	☐ C
※ 참고사항 : 흉부방사선 사진은 횡격막 상방 외측 늑골연이 선명하게 잘 보여야 함 ※ 점검서류 :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원내촬영 5매, 원외촬영 5매)로 평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2.20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 횡격막 양측)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홍부방사선 사진에서 횡격막 양측이 선명하 게 잘 보이는지 평가	홍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4매 이상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	☐ A
	홍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	☐ B
	홍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 미만에서 선명하게 잘 보임	☐ C
※ 참고사항 : 홍부방사선 사진은 양측 횡격막이 선명하게 잘 보여야 함 ※ 점검서류 : 홍부방사선사진 촬영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원내촬영 5매, 원외촬영 5매)로 평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2.21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 추간관 공간)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홍부방사선 사진에서 전체 추간관 공간이 잘 보이는지 평가	홍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4매 이상에서 잘 보임	☐ A
	홍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에서 잘 보임	☐ B
	홍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 미만에서 잘 보임	☐ C
※ 참고사항 : 홍부방사선 사진은 전체 추간관 공간이 잘 보여야 함 ※ 점검서류 : 홍부방사선사진 촬영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원내촬영 5매, 원외촬영 5매)로 평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2.22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투과상태, 해상도, 대조도 : 대엽성기관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홍부방사선 사진에서 대엽성기관지(우상엽 과 우중간기관지)가 잘 보이는지 평가	홍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4매 이상에서 잘 보임	☐ A
	홍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에서 잘 보임	☐ B
	홍부방사선 촬영 자료 중 3매 미만에서 잘 보임	☐ C
※ 참고사항 : 홍부방사선 사진은 우상엽과 우중간기관지가 잘 보여야 함 ※ 점검서류 : 홍부방사선사진 촬영 평가를 위한 제출 자료(원내촬영 5매, 원외촬영 5매)로 평가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 항목 1.3.1	진폐정도관리(폐활량 검사: 참고사항 파악)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결과
설문(환류) 기록으로 과거의 질환 여부 등의 참고 사항을 파악하는지 평가	참고사항 내용 모두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 A
	참고사항 내용 50%이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 B
	참고사항 내용 50%이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 C
※ 참고사항 : 검사 전 설문 기록으로 과거의 호흡기계 질환의 여부, 과거력 및 직업력, 흡연력, 검사 직전 흡연여부, 약물 복용 여부, 현재 호흡곤란 증상 정도, 현재 감기, 폐렴,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의 여부, 최근 수술 및 심장 질환 치료 여부, 과거 폐활량검사의 여부, 검사시 자세(앉은 자세, 선 자세), 피검사자의 검사노력의 정도(협조, 보통, 비협조) 여부 ※ 점검서류 : 폐활량검사 설문지 등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 평가 관련 기타 의견		

평가 항목 1.3.2	진폐정도관리 (폐활량 검사 : 실시 횟수)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결과
검사 실시 횟수	임의 선정 평가 대상 자료 5건 중 5건 적절	☐ A
	임의 선정 평가 대상 자료 5건 중 3-4건 적절	☐ B
	임의 선정 평가 대상 자료 5건 중 3건 미만 적절	☐ C
※ 참고사항 : 표준화 폐활량 검사의 적합한 방법으로 모두 3회 이상 검사 실시 여부 ※ 점검서류 : 피검사자 검사 결과지 등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 평가 관련 기타 의견		

평가 항목 1.3.3	진폐정도관리(폐활량 검사:적합성평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결과
폐활량 검사의 적합성 평가	임의 선정 평가 대상 자료 5건 중 5건 적절	☐ A
	임의 선정 평가 대상 자료 5건 중 3-4건 이상 적절	☐ B
	임의 선정 평가 대상 자료 5건 중 3건 미만 적절	☐ C
※ 참고사항 : 시작점 및 세고 빠르게 붙어냄, 검사 중 기침 또는 흡기, 혀에 의한 개구부의 막힘, 호기 유량곡선 형태의 다양성, 조기종단, plateau 도달, 최대 호기유속 적정 등 여부 ※ 점검서류 : 피검사자 검사 결과지 등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 평가 관련 기타 의견		

평가 항목 1.3.4	진폐정도관리(폐활량 검사 : 재현성 평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결과
가장 큰 수치의 결과 값(노력성 폐활량 및 일초량)과 다음 결과 값의 차이, 3번 이상의 검사기록	임의 선정 평가 대상 자료 5건 중 5건 적절	☐ A
	임의 선정 평가 대상 자료 5건 중 3-4건 이상 적절	☐ B
	임의 선정 평가 대상 자료 5건 중 3건 미만 적절	☐ C
※ 참고사항 : 3개의 적합한 검사 결과 중에서 가장 큰 수치의 노력성 폐활량 및 일초량이 다음으로 큰 수치의 노력성 폐활량 및 일초량과의 차이가 5% 이내 또는 200 ml 이내에 있는 경우, 폐활량 검사의 적합성 판단 기준을 준용한 3번 이상의 검사기록이 있는 경우 ※ 점검서류 : 피검사자 검사 결과지 등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 평가 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4.1	청력정도관리 (2차 검사 시행의 적정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2차 순음청력검사 시행의 적정성 평가	2차검사 대상자에 대한 2차 검사 전원 실시	☐ A
	2차 검사를 전원 실시하였으나 일부 청력검사 항목이 누락	☐ B
	1명 이상 2차 검사 미실시	☐ C
※ 참고사항 : 1차 검사 결과 200Hz에서 30dB, 3000Hz에서 40dB, 4000Hz에서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을 어느 하나라도 보이는 경우에 정밀청력검사(2차)를 실시하여야 함 ※ 점검서류 : 소음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중 선택검사(2차, 정밀) 대상자의 순음청력검사 자료 20매 이상 및 해당 근로자 포함된 사업장의 소음특수건강진단 수진자 전체 개인표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청력정도관리 자료평가 항목에 포함)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4.2	청력정도관리 (적절한 골도 청력검사 수행)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2차 순음청력검사서 각 주파수별 기도 역치에 따른 골도 청력 검사 실시의 적정성 평가	2차검사 순음청력검사이 100%에서 골도청력검사 적절히 수행	☐ A
	2차검사 중 순음청력검사이 80% 이상에서 골도청력 검사 적절히 수행	☐ B
	2차검사 중 순음청력검사이 80% 미만에서 골도청력 검사 적절히 수행	☐ C
※ 참고사항 : 기도의 500, 1000, 2000 Hz에 대한 평균 청력손실이 20 dB 이상인 경우에는 청력역치가 20 dB 이상인 해당 주파수에 대하여 골도 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하여야 함 ※ 점검서류 : 소음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중 선택검사(2차, 정밀) 대상자의 순음청력검사 자료 20매 이상 및 해당 근로자 포함된 사업장의 소음특수건강진단 수진자 전체 개인표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청력정도관리 자료평가 항목에 포함)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4.3	청력정도관리 (적정한 기도 음차폐 검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2차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우 기도청력 차폐검사 실시의 적정성 평가	2차검사 중 순음청력검사시 기도청력검사에서 100%에서 필요한 음차폐 실시	☐ A
	2차검사 중 순음청력검사시 기도청력검사에서 80% 이상에서 필요한 음차폐 실시	☐ B
	2차검사 중 순음청력검사시 기도청력검사에서 80% 미만에서 필요한 음차폐 실시	☐ C
※ 참고사항 : 기도 순음청력검사의 차폐는 측정 주파수에서 검사 귀(T)와 비검사귀(NT)의 기도 역치가 이간 감쇠(Interaural attenuation, IA; B 40 dB) 이상 차이가 나거나($AC_T - AC_{NT} \geq 40$ dB), 혹은 측정 주파수에서 검사 귀의 기도역치와 비검사 귀의 골도역치가 1A 이상 차이가 날 때 ($AC_T - BC_{NT} \geq 40$ dB) 시행함 ※ 점검서류 : 소음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중 선택검사(2차, 정밀) 대상자의 순음청력검사 자료 20매 이상 및 해당 근로자 포함된 사업장의 소음특수건강진단 수진자 전체 개인표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청력정도관리 자료평가 항목에 포함)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4.4	청력정도관리 (적정한 골도 음차폐 검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2차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우 기도청력 차폐검사 실시의 적정성 평가	2차검사 중 순음청력검사시 골도청력검사에서 100%에서 필요한 음차폐 실시	☐ A
	2차검사 중 순음청력검사시 골도청력검사에서 80% 이상에서 필요한 음차폐 실시	☐ B
	2차검사 중 순음청력검사시 골도청력검사에서 80% 미만에서 필요한 음차폐 실시	☐ C
※ 참고사항 : 골도청력검사시 기도역치가 골도역치보다 10dB이상 차이가 날 때 차폐검사를 시행함 ※ 점검서류 : 소음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중 선택검사(2차, 정밀) 대상자의 순음청력검사 자료 20매 이상 및 해당 근로자 포함된 사업장의 소음특수건강진단 수진자 전체 개인표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청력정도관리 자료평가 항목에 포함)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5.1	분석정도관리 (유기분야)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최근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지정, 선택 항목 유기 분야 참가 결과 평가	모두 적합	☐ A
	1회 부적합	☐ B
	2회 이상 부적합	☐ C
※ 참고사항 : 최근 질관리 평가 이후(최근 2년간)의 정기 정도관리 결과를 모두 검토하여 해당 분야가 모두 적합한 경우 적합으로 평가함 ※ 점검서류 : 분석정도관리 결과 통보서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5.2	분석정도관리 (무기분야)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최근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지정, 선택 항목 무기 분야 참가 결과 평가	모두 적합	☐ A
	1회 부적합	☐ B
	2회 이상 부적합	☐ C
※ 참고사항 : 최근 질관리 평가 이후(최근 2년간)의 정기 정도관리 결과를 모두 검토하여 해당 분야가 모두 적합한 경우 적합으로 평가함 ※ 점검서류 : 분석정도관리 결과 통보서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5.3	분석정도관리 (분석 값)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최근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분석값 설명 자료 검토 결과 평가	100 점 이상	☐ A
	60점 이상 100 점 미만	☐ B
	60 점 미만	☐ C
※ 참고사항 : 질관리 평가 이후 가장 최근의 결과를 검토함 ※ 점검서류 : 분석정도관리 결과 통보 양식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5.4	분석정도관리(자율항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최근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자율항목 참가 결과 평가	자율항목 적합 2 항목 이상	☐ A
	자율항목 적합 1 항목	☐ B
	자율항목 미참가	☐ C
※ 참고사항 : 최근 질관리 평가 이후의 결과를 모두 검토하여 적합한 항목의 수를 합하여 평가함 ※ 점검서류 : 분석정도관리 결과 통보 양식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5.5	분석정도관리 (자율항목 분석 적합 항목 수)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최근 특수건강진단 분석 석정도관리 자율항목 참가 결과 평가	분석 적합 항목 수	항목수
※ 참고사항 : 최근 질관리 평가 이후의 결과를 모두 검토하여 적합한 항목의 수를 합하여 평가함 최대 5점 ※ 점검서류 : 분석정도관리 결과 통보 양식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5.6	분석정도관리(내부정도관리 : 무기분석)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기관 자체 수행 무기 분석 평가	내부정도관리를 지침대로 실시함	☐ A
	내부정도관리 지침 비치	☐ B
	내부정도관리 미실시	☐ C
※ 참고사항 : 내부정도관리용 표준 시료는 시판 표준 물질, 국내외 정도관리 시료로 함. 기관 자체 제조 시료는 기지 표준 물질과 같이 10 회 이상 분석하여 기준값을 정한 시료를 사용하였는지 평가함. 기준값의 회수를 차트 작성, 검량선 자료 기록, ※ 점검서류 : 내부정도관리 관련 분석 자료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5.7	분석정도관리 (내부정도관리 : 유기분석)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기관 자체 수행 유기 분석 평가	내부정도관리를 지침대로 실시함	☐ A
	내부정도관리 지침 비치	☐ B
	내부정도관리 미실시	☐ C
※ 참고사항 : 내부정도관리용 표준 시료는 시판 표준 물질, 국내외 정도관리 시료로 함. 기관 자체 제조 시료는 기지 표준 물질과 같이 10 회 이상 분석하여 기준값을 정한 시료를 사용하였는지 평가함. 기준값의 회수를 차트 작성, 검량선 자료 기록, ※ 점검서류 : 내부정도관리 관련 분석 자료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1.5.8	분석정도관리 (외부정도관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외부정도관리 참가 결 과 평가(공단 외)	무기, 유기분석 모두 적합	☐ A
	무기, 유기분석 중 한 분야만 적합	☐ B
	외부정도관리 미실시	☐ C
※ 참고사항 : 최근 질관리 평가 이후의 결과를 모두 검토하여 적합 실적이 있는 분야를 평가함. 타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분석 수행 계약을 맺은 기관의 결과로 평가함 ※ 점검서류 : 외부정도관리 결과 통보 양식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가능 정도관리 제시		
평가관련 기타 의견		

2.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평가항목 2.1.1	사전조사(사업주로부터 대상자 명단 확보)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사업주로부터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 확보 여부	조사 대상 사업장의 80% 이상	☐ A
	조사 대상 사업장의 50% 이상 ~ 80% 미만	☐ B
	조사 대상 사업장의 50% 미만	☐ C
※ 참고사항 : ① 조사 시행 전년도에 특수건강진단 시행 사업장들중 50인 이상 사업장 5개소와 50인 미만 사업장 5개소를 선정하여 평가함 ※ 점검서류 : 사업주로부터 제출된 대상자 명단 혹은 DB 자료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1.2	사전조사(기관에서 대상 파악 적극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명단을 제공하는지의 여부	조사 대상 사업장의 80% 이상	☐ A
	조사 대상 사업장의 50% 이상 ~ 80% 미만	☐ B
	조사 대상 사업장의 50% 미만	☐ C
※ 참고사항 : ① 대상사업장은 2.1.1 항목의 사업장과 동일함 ② 사업장에서 제출한 명단에 대해서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검색 근거 확인 ③ 제공 명단에는, 근무자 이름, 부서, 노출인자, 기타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함 ※ 점검서류 : 특수건강진단 명단 수정한 서류나 DB 자료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1.3	사전조사(산업의학 전문의 검토)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산업의학 전문의가 특수건강진단 준비로서 대상자 명단 검토에 참여 여부	조사 대상 사업장의 50% 이상	☐ A
	조사 대상 사업장의 30% 이상 ~ 50% 미만	☐ B
	조사 대상 사업장의 30% 미만	☐ C
※ 참고사항 : ① 대상사업장은 2.1.1 항목의 사업장과 동일함 ②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실무자와 면담을 통해 파악한 후 각 항목의 해당사항 유무에 대해 평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도 구비되어있는지 확인 ③ 산업의학전문주의 확인 서명란에 서명 여부 확인(양식 별도 추가) ※ 점검서류 : 선정과정에서의 산업의학전문주의 서명란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1.4	사전조사(실무자 검토)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검토 실무자 수행 여부	조사 대상 사업장의 80% 이상에서 검토 실무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A
	조사 대상 사업장의 50~79%에서 수행하는 경우	☐ B
	조사 대상 사업장의 50% 미만에서 수행하는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대상사업장은 2.1.1 항목의 사업장과 동일함 ② 검토실무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건강진단 소속 근무자(간호사, 산업위생기사)로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작성에 실무적인 책임을 가진 자로 한다. ③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대상자 검토 실무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 ※ 점검서류 : 검토 실무자 확인 서명란에 서명 여부 확인(양식 별도 추가)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2.1	문진(직업력 조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문진표 확인 등을 통한 직업력 조사확인	직업력 및 현재 작업부서명과 관련하여 측정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음	☐ A
	건강검진 문진표에 과거 직업력 및 현재 작업부서명이 기재되어 있음	☐ B
	위의 두 경우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와 활용이란 사전조사에서의 과거 자료확보와 사전조사 자료활용이 문진표에 인쇄나 기타 다른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로 간주함 ② 현장에서 문진을 통해 의사나 접수담당자 혹은 근로자 본인이 수기나 인쇄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로 간주함 ※ 점검서류 : 사전조사항목의 ‘과거 자료확보와 사전조사 자료활용’과 동일한 자료, 특수건강진단관련 문진표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2.2	문진(병력조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문진표 등을 통한 과거 병력조사확인	(지난 해 검진한 사업장의 경우) 과거 병력이 인쇄 등으로 문진표에 기록되어 있고 매해 의사에 의해 현장에서 기록이 되는 경우	☐ A
	과거 병력이 활용이 되지 않고 매해 의사에 의해 병력 조사가 현장에서 기록 되는 경우	☐ B
	병력조사관련 정보가 기술되지 않은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전산처리나 기타 검진기관내 업무관련 매뉴얼에 해당내용이 기재되는 등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경우 ② A에 대한 인정은 대상 사업장의 50%가 적합한 것으로 정한다. ③ 현장에서 문진을 통해 특수건강진단 의사가 수기나 전산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 점검서류 : 전산프로그램, 업무관련 매뉴얼, 직무기술서, 문진표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2.3	문진(유해요인 증상조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노출유해요인에 해당하는 증상표시와 의사 확인여부를 평가	증상문진표에 상담관련 의사가록이 80% 이상이 있는 경우	☐ A
	증상문진표에 상담관련 의사가록이 50% 이상 - 80%미만인 경우	☐ B
	증상문진표에 상담관련 의사가록이 50% 미만인 경우	☐ C
※ 참고사항 : 상담관련 의사필체의 기록이 있는 경우에 인정함 ※ 점검서류 : 문진표, 증상조사표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2.4	문진(문진결과의 활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문진결과가 2차 검진, 사후관리 등에 반영하는 내부 지침(guide)존재 확인	내부 지침이 있는 경우	☐ A
	내부 지침이 없는 경우	☐ B
		☐ C
※ 참고사항 : ① 건수는 특수 건강진단 사례가 적은 경우(임시기준 : 연 3000건 이하)에는 10건이 아닌 사례의 존재 유무를 기준으로 함. ② 해당 사례를 증명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에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점검서류 : 반영된 판정사례관련 서류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2.5	문진 (이학적 검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문진표 확인 등을 통한 이학적 검사 실시유무와 시행의 적절성을 평가	증상문진표에 상담관련 의사기록이 80% 이상이 있는 경우	☐ A
	증상문진표에 상담관련 의사기록이 50% 이상 - 80%미만인 경우	☐ B
	증상문진표에 상담관련 의사기록이 50% 미만인 경우	☐ C
※ 참고사항 : 상담관련 의사필체의 기록이 있는 경우에 인정함 ※ 점검서류 : 전문교육 이수과 관련된 공문, 영수증, 수료증 등을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3.1	청력검사 (일치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청력검사결과의 일치성 여부	조사 대상 사업장의 5% 미만	☐ A
	조사 대상 사업장의 5~10%	☐ B
	조사 대상 사업장의 10% 이상	☐ C
※ 참고사항 : ① 대상사업장은 조사 당시 현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연속해서 청력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사업장들 중 10개소를 선정함 ② 상기 10개소 사업장들에서 무작위로 2개 사업장을 선별하여, 과거 2년간 2차 청력특수건강진단 검사를 시행한 사업장당 동일인 5명씩을 선정하여 청력검사 결과의 일치성을 조사함 ③ 평균 청력검사 결과상 10dB 이상 좋아진 경우 ※ 점검서류 : 청력검사 결과지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3.2	청력검사자 (자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청력검사 수행업무자의 자격 적합여부	청력정도관리 자격자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 A
	청력정도관리 자격자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 B
	청력정도관리 무자격자가 수행한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대상사업장은 2.3.1 항목의 사업장과 동일함 ② 청력검사 수행업무자의 청력정도관리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함 ③ 2명 이상인 경우 1명이라도 5년 이상이면 A로 평가 함 ④ 경력의 기준은 개인별 실무 경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신규 교육 이수일로부터 계산) ※ 점검서류 : 청력 정도관리 이수증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3.3	청력검사 (시행시기 통보)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청력검사 시행시기의 통 보 여부	조사 대상 2개 사업장 모두 확인 가능	☐ A
	조사 대상 사업장 중 1개소만 확인 가능	☐ B
	조사 대상 사업장 모두 아닌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대상사업장은 2.3.1 항목의 사업장들 중 조사 시기에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조사한 사업장 2개소를 선정함 ② 청력검사가 소음 노출 중단 후 14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 안내를 해당 사업장에 통보하는 지를 확인 ③ 해당 사업장의 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 ※ 점검서류 : 전화로 확인 및 관련 확인 서류 보유 여부 확인(별도 서식 필요)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4.1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 (지침서 보유)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시 료채취를 위한 체계적 인 지침서 보유 여부	조사 대상 사업장의 80% 이상	☐ A
	조사 대상 사업장의 50% 이상 ~ 80% 미만	☐ B
	조사 대상 사업장의 50% 미만	☐ C
※ 참고사항 : ① 대상사업장은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을 함께 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들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장 5개소 선정 ② 상기 사업장 5개소에는 해당 노출인자가 톨루엔 등(작업종료 후 채취물질로 한정) 사업장이 적어도 2개소를 포함하여 선정할 것 ③ 지침서내에는 시료채취에 대한 업무분장, 채취시기 및 방법에 대한 사업장 안내 등이 수록된 지침서 보유 여부 확인 ※ 점검서류 : 시료채취 지침서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4.2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 (채취 방법)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수건강진단 요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 접 시료채취하는지 여 부	조사 대상 2개 사업장 모두 확인 가능	☐ A
	조사 대상 사업장 중 1개소만 확인 가능	☐ B
	조사 대상 사업장 모두 아닌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대상사업장은 2.3.4 항목의 사업장들 중 조사 시기에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조사한 사업장 2개소를 선정함 ② 해당 사업장의 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 ※ 점검서류 : 전화로 확인 및 관련 확인 서류 보유 여부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4.3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 (톨루엔 채취 시간)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톨루엔에 대한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의 경우 작 업 종료 시 시료 채취 여 부	조사 대상 2개 사업장 모두 확인 가능	☐ A
	조사 대상 사업장 중 1개소만 확인 가능	☐ B
	조사 대상 사업장 모두 아닌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대상사업장은 2.3.4 항목의 사업장들 중 조사 시기에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톨루엔에 대한 생물학적 노 출지표 검사를 시행한 사업장 2개소를 선정함 ② 해당 사업장의 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 ※ 점검서류 : 전화로 확인 및 관련 확인 서류 보유 여부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5.1	건강진단 결과 (판정)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건강진단 결과 판정방법	건강진단결과 판정 에 임상참고치, 이상징후, 노출 추정, 관찰, 그리고 생물학적 노출지표를 모두 를 활용해 건강진단 결과를 판정한 경우 (적정 성 80%이상)	☐ A
	건강진단결과 판정에 임상참고치, 이상징후, 노출추 정, 관찰, 그리고 생물학적 노출지표를 일부 활용해 건강진단 결과를 판정한 경우(적정성 60-80%)	☐ B
	건강진단결과 판정에 임상참고치, 이상징후, 노출추 정, 관찰, 그리고 생물학적 노출지표를 고려하 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판정이 루어진 경우 (적 정성 60%미만)	☐ C
※ 참고사항 : ① 전체 건강진단 판정 결과 분포를 살펴보고 ② 건강진단 결과 판정 방법에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고 판정의 적정성을 평가 함. ③ 적정성의 최종 평가는 산업의학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림. ※ 점검서류 : 건강진단 결과 판정에 쓰인 의사의 진찰 기록, 측정자료, 생물학적 노출 자료, 임상결과 자 료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5.2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 방법)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평가 (C1,C2,D1,D2) 방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업무관련성 평가 (C1,C2,D1,D2)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 (적정성 80%이상)	☐ A
	업무관련성 평가 (C1,C2,D1,D2)에 대한 근거 자료가 다소 부족함(적정성 60-80%)	☐ B
	업무관련성 평가 (C1,C2,D1,D2)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 (적정성 60%미만)	☐ C
※ 참고사항 : ① 유기용제, 중금속, 소음의 업무관련성 판정 사례 5례를 뽑아 판정 근거자료를 확인하며 ② 결과 판정 질관리에 참여한 산업의학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평가함. ※ 점검서류 : 업무관련성 평가에 대한 증빙 서류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5.3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업무적합성 평가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평가	업무적합성 평가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 (적정성 80%이상)	☐ A
	업무적합성 평가에 대한 근거 자료가 다소 부족함(적정성 60-80%)	☐ B
	업무적합성평가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적정성 60%미만)	☐ C
※ 참고사항 : ① 유기용제, 중금속, 소음의 업무적합성 판정 사례 5례를 뽑아 판정 근거자료를 확인하며 ② 결과 판정 질관리에 참여한 산업의학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평가함. ※ 점검서류 : 업무적합성 평가에 대한 증빙 서류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6	특수건강진단 결과 설명회 개최 노력도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수건강진단 결과 설명회 개최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평가	전체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업장 중 ()% 이상 개최한 경우	☐ A
	(~)%인 경우	☐ B
	()%미만인 경우	☐ C
※ 참고사항 : 해당 % 기준은 미정(설명회 등을 통하여 최종 확정) ※ 점검서류 : 특수건강진단결과 설명회 개최 증빙자료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7	청력정도관리 - 판정의 적정성 (판정의 신뢰도)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청력검사기의 보정점검 실시 여부 확인	전음성, 감각신경성, 혼합성난청 등 난청유형에 따른 적절한 판정 및 D1의 적정성 80% 이상	☐ A
	전음성, 감각신경성, 혼합성난청 등 난청유형에 따른 적절한 판정 및 D1의 적정성 60-80%	☐ B
	전음성, 감각신경성, 혼합성난청 등 난청유형에 따른 적절한 판정 및 D1의 적정성 60% 미만	☐ C
※ 참고사항 : 1)기도 순음 청력검사상 4000Hz의 고음영역에서 5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인정되고 삼분법 500(a), 1000(b), 2000(c)에 대한 청력손실정도로서 (a+b+c)/3 평균 30dB이상의 청력손실이 있고 2) 직업력 상 소음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D1으로 판정한다 ※ 점검서류 : 건강진단 개인표 및 청력도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청력정도관리 자료평가 항목에 포함됨)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8	건강진단 결과표 송부의 신속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수건강검진 수행 날짜와 결과 개인표 송부의 날짜를 비교하여 평가함	건강진단 결과표 30일 이내 송부 100%	☐ A
	건강진단 결과표 30일 이내 송부 80% 이상 ~ 100% 미만	☐ B
	건강진단 결과표 30일 이내 송부 80% 미만	☐ C
※ 참고사항 : ① 대상자는 상기 항목 사업장과 동일함.(10개소) ②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결과를 설명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 통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함 ③ 건강진단 결과 보고의 신속성은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 모두에 해당함 ※ 점검서류 : 해당 사업장의 특수건강검진 용지 및 결과표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9	진단검사 시료 보관에 관한 지침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수건강진단시 채취한 시료의 냉장보관 및 운반에 관한 지침서 보유 유무	지침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	☐ A
	지침서를 보유만 하고 있음	☐ B
	지침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C
※ 참고사항 : ① 일반건강진단 지침서에 시료 채취 후 처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특수건강진단에도 해당되는 질적 요건임 ※ 점검서류 : 지침서 증빙 서류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10	진단·기능검사의 관리에 관한 지침서(시설장비유지관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진단·기능검사(폐기능 등)기기 관리 방안에 관한 지침서 유무 확인	지침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	☐ A
	지침서를 보유만 하고 있음	☐ B
	지침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C
※ 참고사항 : 지침서는 진단·기능검사가 업무를 수행 시 참고 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함 ※ 점검서류 : 진단·기능검사 관리방안에 관한 지침서 증빙 서류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11	특수건강진단 검진 및 판정의 지침서 또는 매뉴얼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수건강진단 검진 및 판정의 지침서 또는 매뉴얼 보유 유무 확인	지침서 또는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	☐ A
	지침서 또는 매뉴얼을 보유만 하고 있음	☐ B
	지침서 또는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C
※ 참고사항 : 지침서 또는 매뉴얼은 특수건강진단의사가 판정이나 기타 업무 수행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함 ※ 점검서류 : 특수건강진단 검진 및 판정의 지침서 또는 매뉴얼 증빙 서류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2.12	건강진단 결과 판정의 외부 전문가 검토 <가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외부 전문가 검토 기록을 조사	특수건강진단 결과 판정의 외부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았으며, 질관리개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A
	특수건강진단 결과 판정의 외부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은 적이 있다.	☐ B
		☐ C
※ 참고사항 : ① 외부 전문가란 대한산업의학회 등 비영리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를 말하며, 이들이 검토한 경험을 확인 하는 것이며 ②내부의 질관리 개선활동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CQI (Continous Quality Improvement)활동으로 인정함. ※ 점검서류 : 학회 peer review 과정 참여 인증자료를 확인(peer review : 학회 등 동료 전문가 검토)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3. 시설·장비의 성능

평가항목 3.1.1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내부정도관리 : Densitometer측정)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Densitometer 측정을 통해 내부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 화질 관리 기록부 확인을 통해 평가 (필름/스크린 시스템)	주1회 이상 측정하고 결과 기록유지(모두 실시)	☐ A
	월 1회-3회 측정하고 결과 기록유지(모두 실시)	☐ B
	측정 자체를 하지 않거나 측정만 하고 결과를 기록을 하지 않을 경우	☐ C
※ 참고사항 : 홍부촬영시 Densitometer를 실제 사용하여 결과를 기록 유지하는지 확인 ※ 점검서류 : 측정기록부 등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1.2	홍부방사선사진 촬영분야 (내부정도관리 : 시설 장비의유지보수)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①CR리더기 ②DR장비/디텍터 ③홍부판독용 모니터 정도관리 실시여부를 서류를 통해 평가 (디지털 시스템)	자체 또는 외부 장비업체에 의뢰하여 실시(3개 장비 모두실시)	☐ A
		☐ B
	3개 장비 중 하나라도 실시 않음	☐ C
※ 참고사항 : 홍부촬영시 사용하는 CR리더기, DR장비/디텍터, 홍부판독용 모니터를 자체 또는 외부 장비업체에 의뢰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하되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 A/s기간 내에 있는지 또는 의뢰 계약서가 있는지 서류 확인 ※ 점검서류 : 자체 유지보수 실시결과표 또는 외부의뢰 계약서 및 결과표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 항목 3.2.1	폐활량검사 (장비 보유 및 유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결과
장비 보유 및 유지	규격 사항 모두 만족	☐ A
	규격 사항 50% 이상 만족	☐ B
	규격 사항 50% 미만 만족	☐ C
※ 규격사항 : 1. 유속(최소 0.5 L/Sec - 12 L/Sec) 및 용적에 대한 보정 가능 여부 2. 3리터 보정기 사용 가능 여부 3. 마우스피스 및 1회용 필터 사용 가능 여부 4. 온도/습도/기압 입력(또는 자동감지) 가능 여부 5. 각 피검사자에 대한 유량-용적 곡선 및 용적-시간 곡선의 저장이 최소 3개 이상 가능 여부 6. 예측치(식)의 선택 가능 여부 7. 외삽용적(절대치 또는 백분율) 확인 가능 여부 ※ 점검서류 : 사용중인 검사 장비 규격서 등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 평가 관련 기타 의견		

평가 항목 3.2.2	폐활량검사 (감염예방 조치)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결과
감염 예방을 위한 주기적 청결 및 소독 상태 유지를 확인	관련 장부 비치 및 적절한 기록 유지	☐ A
	관련 장부 비치 및 부적절한 기록 유지	☐ B
	장부 미비치	☐ C
※ 참고사항 : 검사 장비 사용설명서에 따른 주기적 청결 및 소독 상태 유지 여부 ※ 점검서류 : 소독대장, 사용 중인 검사 장비 사용설명서 등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 평가 관련 기타 의견		

평가 항목 3.2.3	폐활량검사 (일회용 필터 사용)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결과
감염 예방 조치-적정한 성능의 일회용 필터 사용	성능 기준에 따른 제품 사용 및 성능성적서 비치	☐ A
	성능 기준에 C한 제품 사용 및 성능성적서 미비치	☐ B
	일회용 필터 사용 안함	☐ C
※ 참고사항 : 검사시 적정한 성능의 일회용 필터(Disposable In Line Filter) 사용 여부 (적정한 성능 기준은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효율 각각 99.9% 이상, 유속 12L/Sec에서 저항 1.5 cmH2O L/S 이하, 사강은 75ml 이하) ※ 점검서류 : 일회용 필터(Disposable In Line Filter) 성능성적서, 구매확인 서류 등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 평가 관련 기타 의견		

평가 항목 3.2.4	폐활량검사 (표준 매뉴얼)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결과
폐활량검사 표준 매뉴얼	적절한 표준매뉴얼 작성 비치	☐ A
	부적절한 표준매뉴얼 작성 비치	☐ B
	표준매뉴얼 없음	☐ C
※ 참고사항 : 폐활량검사의 목적 및 표준화 검사방법을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설명, 시범실시 검사에 필요한 피검자의 검사자세 설명, 바른 교정방법에 대한 설명 여부 등 (표준 매뉴얼이 없다면 C) ※ 점검서류 : 폐활량검사 표준 매뉴얼 등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 평가 관련 기타 의견		

평가 항목 3.2.5	폐활량검사 (보정 기록)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결과
폐활량 검사기의 보정 기록	참고사항 내용 모두를 고려하여 보정 실시	☐ A
	참고사항 내용 50% 이상을 고려하여 보정 실시	☐ B
	참고사항 내용 50% 미만을 고려하여 보정 실시	☐ C
※ 참고사항 : 적절한 유속(0.5-12 L/Sec) 및 관련 부속품 체결후의 보정, 온도, 습도, 기압이 적용된 상태에서의 보정, 적절한 보정기 사용 여부 ※ 점검서류 : 온도/습도/기압계 적정 작동 확인 및 보정기 검교정 서류 등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 평가 관련 기타 의견		

평가 항목 3.2.6	폐활량검사 (검사실)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결과
폐활량 검사실의 적정 성 확인	별도의 폐활량 검사실 및 적절한 환기 및 소독 시설 보유	☐ A
	별도의 폐활량 검사실 및 적절한 환기 및 소독 시설 일부 보유	☐ B
	별도의 폐활량 검사실 미보유	☐ C
※ 환기 및 소독 시설 : 1. 폐활량 검사실 창문 설치 여부 2. 폐활량 검사실에 환기시설 설치 여부 3. 폐활량 검사실 내부에 소독시설(자외선 살균 장치 등) 설치 여부 ※ 점검서류 : 피검사자 검사 결과지 등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 평가 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3.1	청력 검사실 및 부스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청력검사실과 오디오 부스 형태 확인	청력검사실과 별도의 오디오 부스	☐ A
	오디오 부스 (상업용)	☐ B
	청력검사실 또는 청력검사실과 오디오부스 전혀 갖추어지지 않음	☐ C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청력정도관리 자료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3.2	청력 검사기 보정점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청력검사기의 보정점검 실시 여부 확인	기능보정과 음향보정점검(최근 1년 이내)을 수행한 경우	☐ A
	기능보정 또는 음향보정점검만을 수행한 경우	☐ B
	전혀 보정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C
※ 참고사항 * 보정점검 시 확인 사항		
이어폰 코드	2000Hz 순음을 50dB HL에서 점검. 코드의 연결부근을 흔들면서 지직거리는 소리 또는 끊어지는 소리가 없는지 확인	
강도	각 주파수에서 30dBHL로 두 이어폰의 강도가 동일함을 확인	
주파수	60dBHL에서 250부터 8000Hz까지 주파수를 변화시킬 때 일정한 변화량을 확인	
강도변화	2000Hz에서 0~90dB HL까지 강도를 증가시킬 때 지직거리는 소리 또는 갑작스런 증가가 없는지 확인	
Interruptor 스위치	2000Hz 60dB HL에서 스위치를 켜고 끌 때 부드럽고 지직거리는 소리가 없는지 확인	
역치변화	청력역치 수준이 안정된 사람의 역치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 귀에서 1000Hz, 4000Hz의 순음에 대한 역치전이 관찰(10dB 이내)	
※ 점검서류 : 기능보정점검 일지 및 음향보정점검 보고서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청력정도관리 자료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4.1	분석정도관리 (표준 분석 지침)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생체시료 노출평가 표준 분석 지침서 평가	표준 분석 지침 비치 : 전자화일 최종본 인쇄물 비치	☐ A
	표준 분석 지침 보완 필요	☐ B
	표준 분석 지침 미비	☐ C
※ 참고사항 : 실제 분석 과정을 반영한 표준 분석 지침을 전자화일 출력물 또는 기관 자체 유인물 형태로 비치함. 수기 첨삭 및 유인물 취합본인 경우는 보완이 필요함으로 평가함		
※ 점검서류 : 표준 분석 지침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4.2	분석정도관리 (장비 사용 지침)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보유 장비별 사용 지침서 평가	보유 장비별 사용 지침 비치	☐ A
		☐ B
	장비 사용 지침 미비	☐ C
※ 참고사항 : 실제 분석 과정을 반영한 장비 사용 지침을 전자화일 출력물 또는 유인물 형태로 비치함.		
※ 점검서류 : 장비별 사용 지침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4.3	분석정도관리 (장비 사용 대장)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분석 장비별 장비 사용 대장 평가	장비 사용 대장 비치 및 정기 점검	☐ A
	장비 사용 대장 비치	☐ B
	장비 사용 대장 미비	☐ C
※ 참고사항 : 실제 분석에 사용하는 주 장비를 점검함(원자흡광분광광도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장비 사용대장을 각 장비 옆에 비치하고 장비별 필수 점검 내용을 사용 시에 기록하는지 평가함(날짜, 사용자, 분석 물질, 분석 시료 수, 분석 방법 화일, 분석 결과 저장 디렉토리, 검출기 및 검출 조건, 소모품이나 가스 교체, 수리 상황) 원자흡광분광광도기는 램프상태 수치, 크로마토그래피 장비는 컬럼 크기와 일련번호, 액체크로마토그래프는 유속과 칼럼 압력 기록 확인 ※ 점검서류 : 장비 사용 대장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점검 사항 세분화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4.4	분석정도관리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 평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 평가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 비치 및 정기 점검	☐ A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 비치	☐ B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 미비	☐ C
※ 참고사항 : ①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이 실험실 내에 비치되어 관련 내용이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 ② 안전보건지침은 혈액, 소변 등 생체 시료 취급에 관한 사항, 가스안전지침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점검서류 : 실험실 안전 지침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4.5	분석정도관리 (시약 보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분석용 시약 보관 상태 평가	시약을 필터설비 시약장이나 국소배기 시약장에 보관함	☐ A
	시약 보관용 설비는 없으나 실험실과 분리된 장소에 시약을 보관함	☐ B
	별도 설비 없이 실험실내에 시약을 보관함	☐ C
※ 참고사항 : 필터 설비 시약장을 보유한 경우 필터 교체를 연 1회 수행하면 A, 아니면 B으로 평가 ※ 점검서류 : 시약캐비닛 관리 대장(해당 장비 보유시)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4.6	분석정도관리(화학 저울 검정 및 교정)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화학 저울 검정 및 교정 평가	화학 저울 외부 기관 검정 및 교정 실시	☐ A
	화학저울 자체 검정 및 교정 실시	☐ B
	화학 저울 검정 및 교정 미실시	☐ C
※ 참고사항 : 전문기관 저울 검교정을 정기적으로 실시(연 1 회)하면 A 전문기관 검교정을 연 1회 미만의 빈도로 실시하나 자체적으로 표준분동으로 검정을 실시하면 B ※ 점검서류 : 화학저울 검교정 대장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4.7	분석정도관리 (국소 배기)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국소 배기 설비 평가	장비별 국소배기 설비가 모두 설치되어 있고 가동됨	☐ A
	국소배기 설비 성능 개선이 필요함	☐ B
	국소배기 장치가 전혀 없음	☐ C
※ 참고사항 : 장비별 국소배기 설비가 되어 있으나 성능이 부족하거나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 흡후드 국소 배기 성능이 부족하거나 개폐장치 고장이면 B으로 평가 ※ 점검서류 : 해당 사항 없음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3.4.8	분석정도관리 (실험실 온도 및 습도)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실험실 온도 및 습도 조절 및 관리 평가	개별 온도 및 습도 조절 설비 및 적정 범위 유지	☐ A
	온도 및 습도 적정 범위 유지하나 개별 조절 및 관리 설비 부족	☐ B
	온도 및 습도 조절 설비 미비	☐ C
※ 참고사항 : 분석 업무 수행 중 24시간 계속 일정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설비 유무 평가(온도 25도 ± 3 도, 습도 50 ± 10%) ※ 점검서류 : 해당 사항 없음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4. 보유 인력의 교육이수 ·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

평가항목 4.1.1	외부 연수교육 (의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교육을 이수한 경우, 기록을 증빙자료를 조사하여 기록	산업의학과 전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부 연수 교육에 참석을 1년에 2회 이상	☐ A
	산업의학과 전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부 연수 교육에 참석을 1년에 1회 이상	☐ B
	산업의학과 전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부 연수 교육에 참석을 1년에 1회 미만	☐ C
※ 참고사항 : ① 횟수는 1인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2인이 각 년1회씩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1년 1회로 간주하며, 1회당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미(단, 4시간 미만의 교육인 경우에는 참석 시간을 합산하여 4시간 이상인 경우 1회로 간주함) ② 산업의학과 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인당 평균 교육 횟수로 계산함 ③ 외부 연수교육이라 함은 정도관리 등 법정 교육 및 학회 참석을 제외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의학회, 지정교육기관 및 관련 유관단체)산업보건관련 기관에 의한 교육을 의미 ④ 교육의 내용은 산업보건과 관련된 주제로 국한한다. ※ 점검서류 : 전문교육 이수와 관련된 공문, 영수증, 수료증 등을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1.2	외부 연수교육 (특수건강진단 업무 간호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교육을 이수한 경우, 기록 을 조사하여 기록	특수건강진단 업무 간호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부 연수 교육에 참석을 1년에 2회 이상	☐ A
	특수건강진단 업무 간호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부 연수 교육에 참석을 1년에 1회 이상	☐ B
	특수건강진단 업무 간호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부 연수 교육에 참석을 1년에 1회 미만	☐ C
※ 참고사항 : ① 횟수는 1인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2인이 각 년1회씩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1년 1회로 간주함 ②간호사 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평균 교육 횟수로 계산함 ③외부 연수교육이라 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 대한산업의학회 교육, 한국산업간호협회 교육, 지정교육기관에 의한 교육을 의미 ※ 점검서류 : 전문교육 이수와 관련된 공문, 영수증, 수료증 등을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1.3	외부 연수교육 (특수건강진단 업무 임상병리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교육을 이수한 경우, 기록을 조사하여 기록	특수건강진단 업무 임상병리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부 연수 교육에 참석을 1년에 2회 이상	☐ A
	특수건강진단 업무 임상병리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부 연수 교육에 참석을 1년에 1회 이상	☐ B
	특수건강진단 업무 임상병리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부 연수 교육에 참석을 1년에 1회 미만	☐ C
※ 참고사항 : ① 횟수는 1인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2인이 각 년1회씩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1년 1회로 간주함 ② 임상병리사의 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평균 교육 횟수로 계산함 ③외부 연수교육이라 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 대한산업의학회 교육, 대한임상병리학회, 지정교육기관에 의한 교육을 의미 ※ 점검서류 : 전문교육 이수와 관련된 공문, 영수증, 수료증 등을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1.4	외부 연수교육 (특수건강진단 업무 방사선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교육을 이수한 경우, 기록을 조사하여 기록	특수건강진단 업무 방사선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부 연수 교육에 참석을 1년에 2회 이상	☐ A
	특수건강진단 업무 방사선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부 연수 교육에 참석을 1년에 1회 이상	☐ B
	특수건강진단 업무 방사선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부 연수 교육에 참석을 1년에 1회 미만	☐ C
※ 참고사항 : ① 횟수는 1인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2인이 각 년1회씩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1년 1회로 간주함 ②분석기사 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평균 교육 횟수로 계산함 ③외부 연수교육이라 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 대한산업의학회 교육, 분석관련 지정교육기관에 의한 교육을 의미 ※ 점검서류 : 전문교육 이수와 관련된 공문, 영수증, 수료증 등을 확인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2	특수건강진단 업무 관련 종사자 내부 직무교육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 기록을 조사하여 기록	특수건강진단 업무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부 직무교육을 1년에 3회 실시	☐ A
	특수건강진단 업무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부 직무교육을 1년에 1~2회 실시	☐ B
	특수건강진단 업무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부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 C
※ 참고사항 : ① 특수건강진단 업무 관련 종사자라 함은 지정인력과 해당 업무 종사자에 한 함 ② 1회의 기준은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미함 ※ 점검서류 : 교육 실시 자료와 교육 대상자 및 참석자 확인이 가능한 문서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3	특수건강진단 업무 관련 종사자의 교육계획수립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보유한 경우, 기록을 조사하여 기록	매년 교육계획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A
	문서를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 B
	문서가 없는 경우	☐ C
※ 참고사항 : ※ 점검서류 : 교육과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계획 등의 문서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4	특수건강진단 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각 해당 학술세미나 참여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수건강진단 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각 해당 학술세미나 참여 여부 조사	전체 인력의 50% 이상이 참여한 경우	☐ A
	전체 인력의 20% 이상 ~ 50% 미만이 참여한 경우	☐ B
	전체 인력의 20% 미만이 참여한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전체 인력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 업무 관련 종사자 전원을 말함 ② 평가기간은 최근 2년간 참석한 여부를 조사함 ※ 점검서류 : 해당 학술 세미나 참석 증빙 자료(영수증 등)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5	내부 특수건강진단 질향상위원회 설치와 개선활동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관련 문서를 조사하여 기록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개선활동에 따른 기록이 있음	☐ A
	위원회만 설치되어 있거나 개선활동만 있는 경우	☐ B
	위원회 설치 및 개선활동이 없는 경우	☐ C
※ 참고사항 : 특수건강진단 질향상위원회는 인원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문서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점검서류 : 위원회 관련 문서, 개선활동 관련 문서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6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의 권리와 책임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지침서 구비 여부 및 직원 면담	지침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은 이를 숙지하고 있다.	☐ A
	지침만 있는 경우	☐ B
	지침이 없는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수검자의 권리와 책임은 의료진으로부터 검진 목적, 검진 방법, 검진 내용 등 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검진결과에 대해 들을 권리,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이외에는 본인의 의무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검진 상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원내규정 준수, 병원 직원 및 다른 수검자에 대한 존중, 건강진단 실시 과정에서 수검자의 건강진단 불이행, 건강진단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결과에 대한 수검자와 의료진의 책임을 말한다. ② 숙지에 대한 조사는 해당 기관의 직원들 중 2명을 임의로 선발하여 해당 지침의 숙지 여부를 구두로 조사한다. ※ 점검서류 : 수검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침, 교육일지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7	건강진단시 직원 신분 공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신분증 패용 상태	전 직원이 신분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그 상태가 양호한 경우	☐ A
	직원의 일부만 신분증을 패용하고 있음	☐ B
	전 직원이 신분증을 패용하고 있지 않음	☐ C
※ 참고사항 : ① 신분증은 사진, 이름, 소속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신분증의 상태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평가결과는 한 단계 낮춤 ③ 신분증 상태는 출장검진 시 별도 점검할 수 있음 ※ 점검서류 : 신분증 상태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8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건강진단 기관 이용자들의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 구축 여부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접수방법이 안내되어 있음	☐ A
	체계만 구축되어 있거나 접수방법만 안내되어 있는 경우	☐ B
	체계와 접수방법이 없는 경우	☐ C
※ 참고사항 : ① 체계 구축이라 함은, 기관내 공식적 문서로 불만 접수, 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말함 ② 불만 및 고충처리 접수는 인터넷, 전화, 직원과 면담, 건의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나, 접수 사항은 확인 가능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함. ③ 불만 및 고충처리 관련 방법에 대해 수진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안내가 되어 있어야 함. 보고체계가 없는 경우 'C'으로 기재함 ※ 점검서류 :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관련 문서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9	고객 만족도 조사와 관련 개선활동 여부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사업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근거자료를 조사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개선활동의 실적이 있는 경우	☐ A
	조사만 실시한 경우	☐ B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경우	☐ C
※ 참고사항 : ①고객만족도 조사라 함은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만족도 등을 조사한 경우를 의미 ② 만족도 조사의 대상자수는 매년 최소한 50명을 대상으로 한다. ③ 개선활동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함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10.1	기록 (충실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건강진단관련 기록지(전산자료 포함)	기록 사항이 누락없이 기재되어 있음	☐ A
	기록되어야 하는 사항이 1~2개 누락되어 있음	☐ B
	기록되어야 하는 사항이 3개이상 누락되어 있음	☐ C
※ 참고사항 : ① 특수건강진단 기록은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에서 정한 방법이 기준이 되어 평가한다. ② 기록은 문진, 검진결과, 결과 판정, 적합도 평가, 사후관리, 검진 사유 또는 제외 사유 등의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기록 확인은 유해인자를 고려하여 건강진단 의사당 5개 이상을 임의 선정하여 조사한다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10.2	기록(문진결과 전산입력 관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문진결과 자료 확인	국가에서 제공한 전산프로그램 또는 자체개발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 A
	문진결과를 한글파일 또는 엑셀 등으로 체계화하여 보관하는 경우	☐ B
	입력을 한글파일 또는 엑셀 등으로 전환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 C
※ 참고사항 : 체계화라 함은 사용 전산프로그램내 메뉴 형식으로 작동하여 문진결과와 입력과 관리가 용이한 것을 말함 ※ 점검서류 : 문진표 관리 현황, 자체개발 프로그램 육안확인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10.3	기록(건강진단 기록 검색의 신속성 및 효율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건강진단 기록 검색 기능 현장 실사	건강진단 기록 검색이 전산으로 신속하게 모두 이루어짐	☐ A
	건강진단 기록이 전산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검색 시간이 5분 이상이거나 검색되지 않는 기록이 있다.(50% 미만)	☐ B
	건강진단 기록의 검색이 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검색되지 않는 기록이 조사 대상의 50% 이상이다.	☐ C
※ 참고사항 : 과거 2년간 건강진단 기록 검색 연도별 검진 의사별 5명 선정(의사가 2명이상인 경우 건강진단 의사당 5명 선정), 전산 자료는 10분 그 이외의 자료는 30분 이내에도 검색이 되지 않으면 검색 불가능으로 보고 종료하고 이는 'C'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검색되지 않은 건수를 기타 의견에 기록해 놓는다. ※ 점검서류 : 의무기록 검색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10.4	기록(건강진단 기록의 관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건강진단 기록 관리를 위한 체계 확인	의무기록 보관에 따른 공식절차가 있고 대장관리자 잘 이루어지고 있음	☐ A
	의무기록 보관에 따른 공식 절차는 있으나 이행정도 또는 대장관리가 C함	☐ B
	의무기록 보관에 따른 공식 절차가 없음	☐ C
※ 참고사항 : ① 건강진단 기록의 관리라 함은 건강진단 관련 서류 일체(전산자료 포함)가 체계적으로 보관 및 관리되는 것을 말함 ② 의무기록 분실은 일정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은 기록에 대해 공식적으로 '소재 미확인'처리를 하는 것이다. '공식적'이라 함은 해당 의무기록에 대해 분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분실 관리 대장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검체 의뢰 기록의 경우 3년, 검체 분석 결과에 따른 서류는 5년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검진결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을 따른다.) ※ 점검서류 :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문서, 분실 관리 대장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11	검체 관리의 적절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검체 채취 및 취급에 관한 지침서 확인 및 업무 담당자 면담 실시	검체 채취 및 취급에 관한 지침서가 있고 면담 결과 담당자가 숙지하고 있음	☐ A
	검체 채취 및 취급에 관한 지침서가 있으나 업무 담당자의 숙지 정도가 낮음	☐ B
	검체 채취 및 취급에 관한 지침서가 없음	☐ C
※ 참고사항 : ① 검체라 함은 혈액, 소변, 객담 등을 말함 ② 검체 채취 및 취급에 관한 지침서에는 채혈방법, 채취해야하는 검체의 종류와 양, 검체 채취 전 수검자를 확인하는 방법, 검체에 적절한 표지를 하는 방법, 진공시험관에 직접 채혈하거나 주사기로 채혈하는 경우에 따라 채혈 용기에 분주하는 순서, 검체 용기로부터 1개기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 숙지 정도 이상의 자검체를 분리하는 경우, 이를 해당 수검자의 검체임을 확인하는 과정, 폐조사는 해당 기관의 관련 업무 종사자들 중 2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작업과정중의 일정시간을 관찰하고 구두로 확인함 ④ 일반건강검진 기관 평가 자료 활용 가능 ※ 점검서류 : 검체 채취 및 취급에 관한 지침서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12	검사 외부 의뢰 체계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검사 외부의뢰 지침서 , 수탁기관 확인서, 결과서, 관련문서와 업무 담당자(진단검사의학관련 부서, 병리검사관련부서 등) 면담	검사 외부 의뢰체계가 수립되어 있고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 있음	☐ A
	검사 외부 의뢰체계는 수립되어 있으나 의뢰검사 기록지, 수탁기관의 인증서 등의 관련 서류가 C함	☐ B
	검사 외부 의뢰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C
※ 참고사항 : ① 검사 외부의뢰 체계가 없는 경우는 '해당무'로 작성하고 평가에서 제외함. ② 의뢰 지침에는 검사 목록과 수탁 기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인증서는 국내 정도관리 프로그램(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핵의학회 등)에서 인증되어 조사시행일 까지 유효한 각종 인증서를 말한다. ③ 내부에서 모든 검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는 'A'로 처리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13	소규모 사업장 건강진단 실시율 <가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소규모 사업장 건강진단 실시율	10인 미만 사업장 검진 실시율이 총 검진의 15% 이상	☐ A
	10인 미만 사업장 검진 실시율이 총 검진의 10-15%	☐ B
	10인 미만 사업장 검진 실시율이 총 검진의 10% 미만	☐ C
※ 참고사항 : ① 소규모의 기준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실시율은 근로자 수로 한다 ③ 대상 근로자에는 건설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 점검서류 :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14	특수건강진단 인력 <가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특수건강진단 지정인력 인원 수 이상 근로자 수	법적 인력 이상 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 A
	법적 인력 이상 인원이 1명 인 경우	☐ B
		☐ C
※ 참고사항 : ① 초과 인력은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관련전공자 또는 자격자의 직종에 관계없이 총 인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인력기준은 평가 전년도 말 기준 특수건강진단 실적과 해당 인력을 비교 ③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전담인력에 한함 ※ 점검서류 : 조직도 등 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첨부/증빙 자료 : ☐유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15	산업의학과 외래 개설 <가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산업의학과 외래 개설 여부	산업의학과 외래가 별도로 개설되어 있음	☐ A
		☐ B
	산업의학과 외래가 없음	☐ C
※ 참고사항 : ① 산업의학과 외래는 해당 기관의 조직도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어야 함 ※ 점검서류 : 조직관련 증빙 서류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평가항목 4.16	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지원 <가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 서비스 (문진표 준비사항, 결과표 통보 시 모국어 서비스 현황)	문진표와 결과표 모두 모국어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음	☐ A
	문진표 또는 결과표 중 1개만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음	☐ B
	모국어 서비스가 없음	☐ C
※ 참고사항 : ① 문진표가 외국어로 번역 되어 있는 것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② 결과표 통보시 외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거나 외국인 수검자가 결과표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지 확인 ③ 문진표, 결과표를 직접 통역하며 설명하는 경우도 관련 서류가 있거나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 모국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봄 ※ 점검서류 : 조직관련 증빙 서류 ※ 첨부/증빙 자료 : ☐ 유 ☐ 무		
평가관련 기타 의견		